

국민연금 재정지속가능성 평가지표개발을 위한 기금결산보고서의 완성도 제고방안

Improving completeness of Comprehensive Financial
Report of National Pension Fund of Korea

원 종 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조 승 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KIHASA



현안보고서 2013-03

**국민연금 재정지속가능성 평가지표개발을 위한 기금
결산보고서의 완성도 제고방안**

**Improving completeness of Comprehensive Financial
Report of National Pension Fund of Korea**

발 행 일 2013년 9월
저 자 원종욱·조승연
발 행 인 최 병 호
발 행 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 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35(우:122-705)
전 화 대표전화: 02)380-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 록 1994년 7월 1일 (제8-142호)
인 쇄 처 한디자인 02)2269-9917
가 격 비매품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ISBN 978-89-6827-029-1 93330

요약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2. 국민연금 결산보고서 관련 적용법	4
3. 결산보고서의 체계 및 구성내용의 비교(2009년 전후)	5
4. 국제회계기준(IRFS, GASB)	15
5. 해외 주요국의 공적연금 재정평가 방법	21
6. 결론 및 제언	41
참고문헌	44
부록	45

본 연구에서는 국민연금 재정지속가능성 관련 지표가 결산보고서에 어떤 형식으로 기술되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관련 법률, 결산보고서의 체계 및 구성을 검토하여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또한 국제회계기준(IRFS, GASB), 해외 주요국의 공적연금 재정평가 방법 등의 비교를 통해 평가지표개발을 위한 기금결산보고서의 완성도 제고 방안을 모색해보았다.

국민연금기금의 결산보고서는 2009년 이전까지 기업회계기준을 따라 작성되어 연금부채에 대한 재무제표의 인식기준이 사실상 불명확하였고, 체계가 미비된 상태였다. 불명확한 기준 하에서 기업회계기준의 적용은 연금부채 인식 및 평가의 왜곡을 야기하였으며, 주식발행을 통한 기업의 증자를 계상하기 위한 대차대조표의 자본계정을 국민연금회계에도 일괄 적용함으로써 대차대조표의 구성상 문제점을 노출하였다. 또한 연금부채에 대한 불명확한 근거로 인해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의 회계적 비일관성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2009년부터 국가회계기준(IFRS)을 국민연금에 적용하고, 기금결산보고서는 통합재무제표 작성을 원칙으로 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연금기금이 갖는 고유한 특성을 기금결산보고서에 제시하려 시도하였으나 여전히 연금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정보제공체계는 확립되지 못하고 있다.

국가회계기준은 일반회계 관점에서 부채의 정의와 개념 및 인식기준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나 국민연금기금 재무제표에는 연금부채에 대하여 정확한 공시가 없다. 필수보충정보와 부속명세서에는 연금부채의 인식기준에 대한 정보도 포함되어 있지 않고, 국가회계기준은 연금부채의 계리적 평가와 인식방법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연금부채평가의 핵심인 적립개선일람표(Schedule of Funding Progress)나 연금부채 계리기준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 국민연금기금의 자산과 부채의 적절한 관계를 표현하기 위한 적립률(Funded Ratio)도 제공되지 않는 상태이다. 이는 필연적으로 국민연금기금회계에서 미래에 발생하는 급여지급의 장기계리적 추정을 제공하는 정보가 미비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미래에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급여를 부채로 인식하지 않는 결과를 야기한다. 결국 미래부채의 현재할인과 계리화의 실패는 순자산을 과대하게 계상하는 문제점을 만들어 낸다. 결국 「국가회계법」을 최상위법으로 한 연금부채의 불명확성은 국민연금기금의 회계처리에 있어서 바람직한 기금회계처리에 대한 기준제시가 필요하다는 논리로 귀결된다.

우리나라의 국가회계기준 체계는 미국의 정부회계기준(GASB)을 원용하고 있는데, GASB는 계리적으로 연금부채를 인식하고 평가하여 재무제표에 포함하고 있으며, 연금기금적립률을 계

산하여 필수보충정보내의 적립개선일람표(Schedule of Funding Progress)에 제시하고 있다. 또한 확정급여형 공적연금제도의 결산보고서(Statement No. 25)에서는 재무제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그리고 필수보충정보가 포함되어 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필수보충정보는 Schedule of Funding Progress(적립개선일람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가회계기준에서는 필수보충정보에 연금보고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연금보고서는 장기재정추계내용(전체)을 기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필수부속정보가 적립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적립개선일람표(Schedule of Funding Progress)를 첨부하지 않고, 재정추계보고서를 첨부한다면 재정추계보고서에는 세대간 회계에 관한 정보 또는 재정평가지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민연금 재정추계보고서는 세대간 회계 관련 정보가 부족하여 결국 필수보충정보가 재무제표를 보완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국가회계기준이 적용된 발효된 2009년, 2010년, 2012년에는 필수보충정보가 전혀 제공되지 않았고, 2011년에는 국민연금장기추계가 첨부되었다.

국민연금 결산보고서와 관련한 또 다른 문제점은 유동자산의 분류이다. 기업회계기준에서 국가회계기준으로 전환되면서 유동자산의 분류가 단기금융상품과 장기금융상품으로 구분된다. 기업회계기준이 적용되던 2009년 이전에는 만기보유, 단기매매증권, 매매가능증권 등으로 구분하였다. 국가회계기준은 유동자산을 만기가 1년 이내이거나 1년 이내로 도래한 금융상품은 모두 단기상품으로 만기가 1년 이상으로 만기도래가 1년 이상 남아있는 경우 장기금융상품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여기에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국민연금 결산보고서를 살펴보면 주식도 장기금융상품과 단기금융상품으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채권은 특성상 만기보유상품으로 구분하는 것이 적절하고 주식은 매도가능상품으로 구분하는 것이 국민연금기금의 자산운용에 보다 더 적합하다고 사료된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는 제도적 측면에서 불안정하고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다양한 지표로 양적·질적 평가가 이루어져야만 한다. 연금제도의 특성상 당해 연도 실적 관련 정보 보다는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결산보고서에서 재무제표에서 제공되는 정보뿐만 아니라 필수보충정보가 중요하게 된다. 특히 국민연금의 경우 향후 부과방식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재무제표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정보 제공의 필요성이 더욱 크다. 우리나라 보다 성숙한 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들이 다양한 평가지표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해 볼 때 제도 및 재정적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우리의 국민연금은 최소한 이들 국가가 사용하는 지표수준으로 평가지표를 다양화시킬 필요가 있다.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기업의 결산보고서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투자자로 하여금 당해연도 경영실적과 함께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기업의 경우, 투자자는 장기적인 안목 보다는 단기적인 안목을 가지기 때문에 당해 연도 실적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연금제도에 대한 결산보고서는 당해연도의 정보 보다는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정보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된다.

연금제도도 완전적립을 목표로 하는 기업연금 또는 직역연금의 결산보고서와 부과방식에 가까운 사회보험의 결산보고서의 구성과 내용이 다를 수 있다. 완전적립을 목표로 하는 연금제도는 적립률이 중요한 재정평가지표가 되며, 부과방식의 연금제도는 세대간 회계 관련 정보가 중요한 재정평가지표가 된다. 연금제도는 당해연도 실적 관련 정보 보다는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결산보고서에서 재무제표에서 제공되는 정보 보다는 필수보충정보가 더욱 중요하게 된다. 국민연금의 경우 부분적립제도이나 완전적립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부과방식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결산보고서는 재무제표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연금의 재정상황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필수보충정보에서 재무제표를 보완할 수 있는 정보, 즉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정보가 제공되어야만 한다.

국민연금기금의 결산보고서는 현재 국가회계법(국가회계법 14조)에서 정한 국가회계기준을 따르고 있으나, 2009년 이전까지 기업회계기준을 따르고 있었다. 기업회계기준을 따르면 자본계정이 있을 수 없는 공적연금제도의 특성상 많은 정보가 왜곡되어 재무제표 자체가 왜곡 그 자체가 된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국가회계기준을 제정하여 2009년부터 국민연금에 적용하기 시작하였다. 국가회계기준의 제정으로 재무제표상의 정보왜곡은 해소되었으나 여전히 연금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정보제공체계는 확립되지 못하고 있다.

국가회계기준의 체계는 미국의 정부회계기준(GASB)을 원용하고 있는데 GASB의 Statement No. 25(Financial Reporting for Defined Benefit Pension Plans and Note Disclosures for Defined Contribution Plans)는 확정급여형 공적연금제도의 결산보고서는 재무제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그리고 필수보충정보가 포함되어야 함을 기술하고 있다. 필수보충정보는 Schedule of Funding Progress(적립개선일람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가회계기준은 필수보충정보에 연금보고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연금보고서는 장기재정추계내용(전체)을 기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필수부속정보가 적립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적립개선일람표(Schedule of Funding Progress)를 첨부하지 않고 재정추계보고서를 첨부한다면 재정추계보고서에는 세대간 회계에 관한 정보 또는 재정평가지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민연금 재정추계보고서는 세대간 회계 관련 정보가 부족하여 결국 필수보충정보가 재무제표를 보완하는데 한계가 있다. 국가회계기준이 발효된 2009년, 2010년, 2012년 에는 필수보충정보가 전혀 제공되지 않았고, 2011년에는 국민연금장기추계가 첨부되었다. 또 다른 문제점은 연금충당부채산정의 대상이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에 국한되어 있다는 것이다. 「연금회계 평가 및 공시지침」은 이들 연금제도에 대해서는 충당부채의 측정과 인식을 위한 세부규정을 두고 있으나 국민연금은 단순히 장기재정추계보고서 만을 첨부하여 정부의 국민연금의 재정지속가능성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에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

국민연금 결산보고서와 관련한 또 다른 문제점은 유동자산의 분류이다. 유동자산은 기업회계기준이 적용되던 2009년 이전에는 만기보유, 단기매매증권, 매매가능증권 등으로 구분되어 왔으나 기업회계기준에서 국가회계기준으로 전환되면서 단기금융상품과 장기금융상품으로 구분하고 있다. 국가회계기준은 유동자산을 만기가 1년 이내이거나 1년 이내로 도래한 금융상품은 모두 단기상품으로 만기가 1년 이상으로 만기도래가 1년 이상 남아있는 경우 장기금융상품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여기에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국민연금 결산보고서를 살펴보면 주식도 장기금융상품과 단기금융상품으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채권은 특성상 만기보유상품으로 구분하는 것이 적절하고 주식은 매도가능상품으로 구분하는 것이 국민연금기금의 자산운용에 보다 더 적합하다고 본다. 본 연구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 관련 지표가 결산보고서에 어떤 형식으로 기술되는 것이 바람직 한 가를 관련 법, 해외사례 및 기준 등과의 비교를 통해 살펴보았다.

2. 국민연금 결산보고서 관련 적용법

가. 2009년 이전

2009년 이전 우리나라 국민연금기금의 회계처리 기준은 「예산회계법」 제10조를 최상위 법으로 하여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 시행령」, 「국민연금기금 특별회계규정」 및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순서로 적용되었다. 때문에 2009년 이전의 국민연금기금의 회계처리는 국민연금기금 회계처리지침인 「국민연금기금 특별회계규정」을 준수해야하며, 동 규정 제2조에 의하여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직접적으로 적용받았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조 4호와 16호는 재무제표의 구성항목과 작성방식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예산회계법(2007.1.1. 시행 2008.12.31. 폐지) 제 101조(기업회계의 원칙)는 특별회계에 의하여 정부가 운영하는 사업은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기술되어 있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제 86조: 기금의 운영 결산 등)에 의하면 공단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한 연간 기금운용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기금결산보고서가 기업회계원칙을 따르기 때문에 결산보고서의 내용도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등으로 구성되고 첨부서류 또한 사업계획 대실적분석보고서,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 기타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함에 필요한 서류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나. 2009년 이후 및 전후 비교

국민연금기금의 회계처리는 200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국가회계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국가회계법」을 최상위법으로 하여 「국가회계법 시행령」,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연금회계준칙」 및 「연금회계 평가 및 공시 지침」의 적용을 받고 있다. 국가회계법 제 14조(2007.10.17. 제정 2013.3.23. 최신개정)에 의하면 결산보고서는 결산 개요, 세입세출결산(기금결산보고서의 경우 기금의 수입지출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으로 구성되며 재무제표는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로 세분화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연금회계준칙(고시 2011년 14호)은 연금부채의 인식, 연금비용의 측정 및 인식, 그리고 연금보고서의 작성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국민연금기금의 회계처리는 「국

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를 기준으로 하여 제5조 이하에서 재무제표와 부속서류의 작성방법을 따르게 되어있다. 또한 기금결산보고서의 구성은 「국가회계법」 제14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국가회계법시행령」 제4조는 결산보고서 중 세입·세출결산에 명시할 사항 및 부속서류의 제출·작성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는 연금부채의 평가방법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령으로 연금회계준칙을 준수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연금회계준칙」은 연금충당부채의 평가방법, 인식기준 및 결산보고서에 포함될 연금보고서의 세부항목의 구성에 대하여 지침을 내리고 있다. 또한 「연금회계 평가 및 공시지침」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의 회계처리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2009년을 기준으로 하여 국민연금기금의 회계처리를 공시하는 결산보고서의 체계도 다른 모습을 보인다. 기업회계를 기준으로 한 2009년 이전의 기금결산보고서는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기본으로 구성되나 2009년 이후의 기금결산보고서는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및 필수보충정보와 부속명세서로 구성되어 있다.

3. 결산보고서의 체계 및 구성내용의 비교(2009년 전후)

국민연금기금의 결산보고서는 2009년 이전에는 기업회계기준 하에서 자산, 부채, 자본 현황을 공시하는 대차대조표와 수익과 비용의 측면에서 기금운용의 순이익을 공시하는 손익계산서를 중심으로 작성되었다. 반면 2009년 이후의 국가회계기준 결산보고서는 총 62개 기금에 대하여 각 기금별로 통합기금결산보고서의 형태로 제시되어 있다. 국가회계기준 기금결산보고서는 자산과 부채의 성격에 따라 분류되는 회계계정을 표시하는 재정상태표와 기금의 원가계상법과 수익 및 비용을 구분하는 재정운영표, 각 회계연도의 순자산의 증감내역 및 원인을 표시하는 순자산변동표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1〉 기업회계 및 국가회계기준 회계항목 및 결산보고서의 구성

	기업회계기준(국민연금특별회계규정 제30조)	국가회계기준(국가회계법 제14조)
회계기준 지시사항	가. 시산표 나. 대차대조표 다. 손익계산서 라. 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마. 현금흐름표 바. 각 계정 명세표 및 부속서류	가. 결산개요 나. 기금의 수입지출결산 다. 재무제표 - 재정상태표 - 재정운영표 - 순자산변동표 라. 성과보고서
정부작성 결산보고서의 구성	〈2008년 결산보고서 기준〉 가. 기금결산개요 - 기금개요 - 기금결산현황 나. 기금결산보고서 - 대차대조표 - 손익계산서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및 결손금처리계산서 - 현금흐름표 - 수입계산서 - 지출계산서 - 자산, 부채 및 자본증감표 - 연도별 재원조성실적표 - 기금운용계획의 변경내용설명서 - 사업성과평가서 - 회계법인감사보고서	〈2011년 결산보고서 기준〉 가. 결산개요 - 기금개요 - 재무제표분석 나. 재무제표 - 재정상태표 - 재정운영표 - 순자산변동표 다.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중요한 회계처리 방법 - 장기차입부채 상환방법 - 장기충당부채 -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 - 기타사항 라. 필수보충정보 - 연금보고서 - 보험보고서 - 사회보험보고서 - 기타사항 마. 부속명세서 - 현금 및 현금성 자산명세서 - 금융상품명세서 - 단기투자증권명세서 - 기타사항

가. 국민연금 결산보고서의 연도별 구성내용변화

「국민연금기금 특별회계규정」 제2조는 2009년 이전의 기금회계기준에 대하여 제4조를 준수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동 규정 제4조는 회계처리계정은 대차대조표 계정과 손익계산서계정으로만 구분한다고 제시되어 있다. 반면 동 규정 제30조의 결산보고 규정에는 결산보고서의 구성항목만 제시되어 있을 뿐, 재무제표의 해당항목에 어떤 회계명세서가 포함되어야 하는지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국민연금기금 특별회계규정」 제2조는 별도로 기금의 회계와 계리에 있어서 ‘정합이 없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조 4호를 근거로 하여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및 주석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또한 동조 동호 규정에 의하면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의 성격을 충실히 나타내는 범위 내에서 사용되는 재무제표의 명칭이 아닌 다른 명칭을 보충적으로 병기할 수 있다고 규정됨으로서 2009년 이전의 기금결산보고서에 포함되는 재무제표의 구성항목은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외에도 결산보고인의 재량에 의하여 재무제표를 구성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009년 이전의 기금결산보고서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현금흐름표 등의 항목을 회계계정으로 추가하여 재무제표를 구성하고 있다.

반면 2009년 이후의 국민연금기금 재무제표는 국민연금을 포함한 기금통합재무제표의 형식으로 재무제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및 부속서류에 해당하는 필수부속명세서와 부속명세서로 구성되어 있다. 2009년 개정 직후의 기금재무제표는 부속서류가 포함되지 않았으나 2010년 이래로 부속서류가 포함된 완전한 구성을 갖추게 되었다. 2011년 국민연금기금의 결산보고서는 재무제표, 주석, 필수보충정보 및 부속명세서까지 가장 완전한 구성을 갖추게 되었다. 필수보충정보에 연금보고서가 포함되었으며, 연금보고서는 국민연금기금운용 및 장기재정추계결과를 포함하고 있다. 2011년 결산보고서는 필수보충정보에서 연금보고서를 포함하고 있는데, 연금보고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연금사업의 장기재정추계결과를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부분에 다시 요약해서 기재함으로써 구성과 내용이 중복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한편 2012년 국민연금기금 결산보고서는 필수보충정보와 부속명세서가 포함되어있지 않으며, 연금사업의 장기재정추계결과를 요약하여 재무제표주석의 연금충당부채 항목에 제시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국민연금기금 결산보고서는 국가회계기준의 적용을 받게 된 2009년부터 동태적으로 구성상의 비일관성을 보인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편제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며, 향후 결산보고서의 개선방향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근거도 없다. 국민연금기금 결산보고서의 문제점 뿐 아니라 결산보고서의 핵심인 재무제표의 구성과 내용에도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다.

〈표 2〉 기업회계 및 국가회계기준 정부결산보고서의 구성

	국가회계기준				기업회계기준
	2012년도	2011년도	2010년도	2009년도	2008년도
재무제표	1. 재정상태표 2. 재정운영표 3. 순자산변동표	1. 재정상태표 2. 재정운영표 3. 순자산변동표	1. 재정상태표 2. 재정운영표 3. 순자산변동표	1. 재정상태표 2. 재정운영표 3. 순자산변동표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4. 현금흐름표 5. 수입계산서 6. 지출계산서 7. 자산, 부채 및 자본증감표 8. 연도별 재원조성실적표 9. 기금운용계획의 변경내용 설명서 10. 사업성과평가서 11. 회계법인 감사보고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1. 중요한 회계처리방법 2. 장기차입부채 상환계획 3. 장기충당부채 ① 퇴직급여충당부채: 미혜당 ② 연금충당부채 - 연금사업의 현황 및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 - 재정상태표일 현재 관련법령에 따른 장기재정추계 주요 내역 4.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 5. 우발사항 및 약정사항 6. 전기오류수정 및 회계처리방법의 변경 7. 순자산조정명세	1. 중요한 회계처리 방법 2. 장기차입부채 상환방법 3. 장기충당부채 ① 퇴직급여충당부채: 미혜당 ② 연금충당부채 - 연금사업의 현황 및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 - 재정상태표일 현재 관련법령에 따른 장기재정추계의 주요 내역 4.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 5. 우발사항 및 약정사항 6. 전기오류수정 및 회계처리방법의 변경 7. 순자산조정명세 8. 기타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과 재무제표의 이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중요한 회계처리 방법 2.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 3. 우발사항 및 약정사항 4. 순자산조정명세 5. 기타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과 재무제표의 이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중요한 회계처리 방법 2. 장기차입부채 상환방법 3. 장기충당부채 4.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 5. 우발사항 및 약정사항 6. 전기오류수정 및 회계처리방법의 변경 7. 순자산조정명세 8. 기타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과 재무제표의 이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국가회계기준				기업회계기준
	2012년도	2011년도	2010년도	2009년도	2008년도
필수 보충정보	해당없음	1. 유산자산의 종류, 수량 및 관리상 테 2. 연금보고서 ①연금사업의 개요 ②연금사업의 자금운용 ③연금사업의 장기재정추계(전체 내용) 3. 보충보고서 4. 사회보험보고서 5. 총잉여금·재정운영결과조정표 6. 수익·비용 성질별 재정운영표 7. 기타 재무제표에는 반영되지 않 보	1. 유산자산의 종류, 수량 및 관리상 테 2. 수익, 비용 성질별 재정운영표 3. 총잉여금, 재정운영결과조정표	해당없음	해당없음
부속명세서	해당없음	1. 현금및현금성자산명세서 2. 금융상품명세서 3. 단기투자증권명세서 4. 장기투자증권명세서 5. 미수채권명세서 6. 대여금명세서 7. 일반유형자산명세서 8. 사회기반시설명세서 9. 무형자산명세서 10. 국채 및 공채명세서 11. 차입금명세서	1. 금융상품명세서 2. 단기투자증권명세서 3. 장기투자증권명세서 4. 미수채권명세서 5. 대여금명세서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업회계기준(2009년 이전)			국가회계기준(2009년 이후)	
대차 대조표	<자산> 1. 유동자산 - 현금 및 현금등가물 - 단기금융상품 - 단기매매증권 - 매도가능증권 - 기타 2. 고정자산 - 매도가능증권 - 지분법적용투자주식 - 장기대여금 - 기타 3. 운용자산 4. 투자 외 기타자산	<부채> 1. 유동부채 - 미지급금 - 예수금 2. 고정부채 - 파생상품부채 - 공단입대보증금 3. 기타부채 <자본> 1. 자본금 - 연금급여적립금 - 기금적립금 2. 자본잉여금 3. 이익잉여금 - 이익적립금 - 미처분이익잉여금 (미처리결손금) 4. 자본조정 -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 - 기타	재정 상태표	<자산> 1. 유동자산 - 현금 및 현금성자산 - 단기금융상품 - 기타 2. 투자자산 - 장기금융상품 - 장기대여금 - 기타 3. 기타비유동자산	<부채> 1. 유동부채 - 기타유동부채 · 파생상품부채 · 미지급금 · 기타 2. 기타비유동부채 -기타의기타비유동부채 · 파생상품부채 · 기타부채 <순자산> 1. 기본순자산 2. 적립금 및 잉여금 3. 순자산조정
	손익 계산서	1. 영업(사업)수익 - 연금보험료수입 - 금융자산운용수익 - 대부사업운용수익 2. 영업(사업)비용 - 연금급여지출액 - 사업비용 3. 영업(사업)총이익 4. 일반관리비 5. 영업(사업)이익 6. 영업(사업)외 수익 - 잡수익 - 장기투자증권손상차손환입 - 기타 7. 영업(사업)외 비용 - 관리운영비전출금 - 기타 8. 경상이익 9. 특별이익 10. 법인세차감전순손익 11. 법인세비용 12. 당기순이익		재정 운영표	1. 프로그램 순원가 - 국민연금운영(여유자금운영위탁 등) - 국민연금운영(급여지급) 2. 관리운영비 3. 비배분비용 - 지급수수료 - 세금과공과 - 기타 4. 비배분수익 - 이자수익 - 평가이익 - 기타 5. 재정운영 순원가 6. 비교환수익 등 - 기타재원조달 및 이전 7. 재정운영결과

(2) 계정간의 비교

(가) 대차대조표 및 재정상태표

기업회계기준의 대차대조표는 국가회계기준의 재정상태표와 계정구성이 유사하며 대체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 양쪽 모두 자산과 부채의 배열은 유동성배열체계를 따르고 있으며 발생주의 회계원칙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차대조표의 자본계정은 기업회계기준으로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금 및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및 이익잉여금으로 구분되는데,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조 30호에 의하면 자본금은 법정자본금으로 하며, 자본잉여금은 증자나 감자 등 주주와의 거래에서 발생하여 자본을 증가시키는 잉여금이라 명시되어 있다¹⁾.

국민연금기금의 자본은 주주와의 거래를 통하여 증자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민간에서 각출된 보험료를 바탕으로 하므로 자본계정의 존재를 고려한 기업회계기준의 대차대조표는 구성상의 문제점이 있다. 이를 반영하여 2009년 이후의 국가회계기준의 재정상태표는 자산, 부채 및 순자산으로 구성되며 자본계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자본금이 재정상태표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적립금 및 잉여금, 공정가액평가기준 순자산조정과 기본순자산으로 계정이 구성되어 있다.

2009년 국가회계법의 시행으로 유동자산의 분류가 장기금융상품과 단기금융상품으로 구분된다. 기업회계의 적용을 받던 2009년 이전에는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지분법 적용투자주식 등으로 구분되어 있었다. 이로 인해 주식과 채권 모두 단기와 장기로 구분해야하고 채권은 만기와 관계없이 만기도래 시점이 1년 이내가 되면 장기채권도 단기금융상품으로 구분된다. 결론적으로 주식을 장기와 단기로 구분하는 것과 채권을 만기도래시점기준으로 장기와 단기로 구분하는 것은 자산운용의 측면에서 보건대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금융자산은 만기보유증권과 매도가능증권, 지분증권 등으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1)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조 30호>

자본잉여금은 증자나 감자 등 주주와의 거래에서 발생하여 자본을 증가시키는 잉여금이다. 예를 들면, 주식발행초과금, 자기주식처분이익, 감자차익 등이 포함된다.

(나) 손익계산서 및 재정운영표

손익계산서는 기업이 회계기간 동안의 경영성과를 보여주는 재무제표의 한 종류이다. 경영성과는 회계기간 동안 평가된 당기순이익으로 측정되는데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방식을 사용한다.

반면 국가회계기준의 재정운영표는 기업회계기준의 손익계산서에 해당하는 재무제표로서 프로그램순원가, 관리운영비, 비배분비용과 비배분수익의 구분에 따라 재정운영순원가가 계산되며 여기에 비교환수익(직접적인 대가관계 없이 발생하는 수익)등을 추가하여 재정운영결과를 계산하는 방식을 이용한다. 따라서 손익계산서와 재정운영표는 계정의 분류와 계정과목의 배열순서 등에 대한 차이가 크다.

(다) 순자산변동표

순자산변동표는 해당 회계연도 동안의 순자산의 변동내역 만을 공시하는 재무제표로서 기초순자산, 재정운영결과, 재원의 조달 및 이전, 조정항목 및 당해년도 기말순자산으로 구분이 되어 표시되어 있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포함되지 않았던 재무제표이다.

복식부기 회계원칙에 따라 기업회계기준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은 대차대조표의 처분전후 이익잉여금으로 연결된다. 반면 국가회계기준의 순자산변동표는 적립금 및 잉여금을 순자산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순자산은 재정상태표에 포함된다. 따라서 순자산변동표와 재정상태표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는 기업회계기준의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의 연결과 대등하다.

(3) 부채계상의 문제점

기업회계기준에서 부채는 유동부채, 고정부채 및 기타부채로 구분이 되어있으나 국민연금기금의 성격상 일반기업회계기준의 부채와 국민연금기금의 부채가 갖는 성격은 상이하다. 기업회계기준 국민연금기금회계에서 부채로 평가될 수 있는 연금부채는 대차대조표의 부채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반면 해당연도 연금급여지급액을 초과하는 연금보험료를 연금급여적립금이라는 항목의 자본으로 표시한다. 그러나 연금급여지급액은 다시 손익계산서 내에 영업비용으로 계상됨으로서 재무제표의 일관성과 발생부채의 평가에 있어서 모

순을 가지고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제22조는 부채의 정의와 구분, 부채의 인식기준 및 장기충당부채의 정의 등 재정상태표의 부채계정에 관한 포괄적인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제17조(부채의 정의와 구분)

- ① 부채는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국가회계실체가 부담하는 의무로서, 그 이행을 위하여 미래에 자원의 유출 또는 사용이 예상되는 현재의 의무를 말한다.
- ② 부채는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장기충당부채 및 기타 비유동부채로 구분하여 재정상태표에 표시한다.

제18조(부채의 인식기준)

- ① 부채는 국가회계실체가 부담하는 현재의 의무 중 향후 그 이행을 위하여 지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 ② 국가안보와 관련된 부채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부채의 종류, 취득시기 및 관리현황 등을 별도의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9조(유동부채)

- ① 유동부채는 재정상태표일부터 1년 이내에 상환하여야 하는 부채로서 단기국채, 단기공채,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및 기타 유동부채 등을 말한다.
- ② 제1항의 기타 유동부채는 미지급금, 미지급비용, 선수금, 선수수의 등을 말한다.

제20조(장기차입부채)

장기차입부채는 재정상태표일부터 1년 후에 만기가 되는 확정부채로서 국채, 공채, 장기차입금 및 기타 장기차입부채 등을 말한다.

제21조(장기충당부채)

장기충당부채는 지출시기 또는 지출금액이 불확실한 부채로서 퇴직급여충당부채, 연금충당부채, 보험충당부채 및 기타 장기충당부채 등을 말한다.

제22조(기타 비유동부채)

기타 비유동부채는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및 장기충당부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채를 말한다.

또한 「연금회계 평가 및 공시지침」은 아래와 같이 연금충당부채의 정의 및 연금부채의 평가를 위한 보험수리적 방법론 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의 연금충당부채 측정과 인식을 위한 세부규정을 공시하고 있다.

제3조(용어의 정의)

- 연금충당부채 : 연금추정지급액 중 재정상태표일 현재의 재직기간까지 귀속되는 금액을 평가시점의 현재가치로 산정한 것
- 보험수리적 가정 : 할인율, 임금상승률, 물가상승률, 퇴직률, 승진률, 사망률 등 연금충당부채와 연금 비용을 측정하는 데 필요한 재무적·인구통계적 가정

제4조(연금충당부채 산정대상이 되는 급여 및 수당의 범위)

4. 연금충당부채는 연금회계준칙 제2장의 연금사업인 공무원연금 및 군인연금에 대하여 인식하며, 공무원연금법 제42조 장기급여와 군인연금법 제6조의 급여 중 아래의 급여를 포함한다.

공무원연금 제42조(장기급여)	연금충당부채 산정대상 여부	군인연금 제6조(급여의 종류)	연금충당부채 산정대상 여부
1. 퇴직급여		1. 퇴직급여	
(1)퇴직연금	O	(1) 퇴역연금	O
(2)퇴직연금일시금	O	(2) 퇴역연금일시금	O
(3)퇴직연금공제일시금	O	(3) 퇴역연금공제일시금	O
(4)퇴직일시금	O	(4) 퇴직일시금	O
2. 장애급여		2. 재해보상적·부조적 급여	
(1)장애연금	X	(1) 상이연금	O
(2)장해보상금	X	(2) 공무상요양비	X
		(3) 사망조위금	X
		(4) 재해부조금	X
		(5) 사망보상금	X
		(6) 장애보상금	X
3. 유족급여		3. 유족급여	
(1)유족연금	O	(1) 유족연금	O
(2)유족연금부가금	O	(2) 유족연금부가금	O
(3)유족연금특별부가금	O	(3) 유족연금특별부가금	O
(4)유족연금일시금	O	(4) 유족연금일시금	O
(5)유족일시금	O	(5) 유족일시금	O
(6)유족보상금	X		
(7)순직유족연금	X		
(8)순직유족보상금	X		
4. 퇴직수당	X	4. 퇴직수당	X

그러나 「연금회계 평가 및 공시지침」은 국민연금기금에 대해서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보장제도에 따른 연금지급의무는 국민 개개인과의 계약관계에 따른 의무가 아니라는 것과 국제적 회계기준과의 비교를 근거로 하여 국민연금의 연금지급의무와 관련된 충당부채는 인식대상이 아닌 것으로 규정이 되어있다²⁾. 결국 본 지침은 군인연금, 공무원연금의 연금충

2) 연금회계 평가 및 공시 지침, 기획재정부, 2012

당부채의 인식과 평가방법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을 뿐이다.

국민연금기금의 회계는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고 있지만 기금결산보고서에 제공되는 재정상태표의 부채는 유동부채, 고정부채 및 기타부채로만 제시되어 있다.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에 의하면 부채는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국가회계실체가 부담하는 의무이며, 그 이행을 위하여 미래의 자원의 유출 또는 사용이 예상되는 현재의 의무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기금회계에 있어서 핵심적인 연금부채의 개념과 정의가 규정된 근거가 명확하게 존재하지 않으며, 부채금액의 추정방법에 대한 내용도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하위규정인 「연금회계 평가 및 공시지침」 역시 국민연금부채의 평가와 인식에 대하여 정보가 부재한 상태이다. 이에 대하여 통합기금재무제표는 2010년부터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과 필수보충정보를 기금재무제표에 포함하여 연금부채에 대한 정보를 간접적으로 제시하려 시도하고 있다.

4. 국제회계기준(IRFS, GASB³⁾)

가. 국제회계기준(IFRS)

(1) 국제회계기준의 특징 및 재무제표구성

국제회계기준은 원칙중심의 기준체계(Principle-based standards)에 따라 회계담당자의 경제적 실질에 기초하여 합리적 회계처리가 가능하도록 회계처리의 기본원칙과 방법론을 제시하며, 연결재무제표(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작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공정가치평가(Fair Value Accounting)의 원칙에 따라 기업의 재무상태 및 내재가치에 대한 의미있는 투자정보를 제공하려 하며, 금융자산·부채와 유·무형자산 및 투자부동산에까지 공정가치 측정을 의무화 또는 선택 적용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⁴⁾. 국제회계기준에서 제시하는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계담당자의 재량으로 국제회계기준의 재무제표에 포함시켜야 할 재무제표를 결정할 수 있음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재무제표의 주석(Notes to the Financial Statements)에 기타중요회계정보 및 부가적으로 추가해야 할 정보사항 등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다.

(2) 부채(Liability)인식방법

국제회계기준의 재정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에서 부채는 정상적 교환거래, 만기일 1년 이내의 부채 등을 중심으로 제시되어 있다. 만기일 1년 이내의 부채를 유동부채(Current Liabilities)로 인식하고 있지만, 부채인식의 기간이 보통 1년 이상인 경우도 이를 유동부채로 평가하여 대차대조표에 계상하게 하고 있다. 또한 미래에 지급해야 할(Payable) 근로자에 대한 적립식 급여(Accruals)도 유동부채로 평가한다. 더욱이 국제회계기준은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에 우발채무(Contingent Liabilities)를 평가하여 명시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 우발채무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 이후에 부과될 의무(Possible obligation)
- 과거사건의 결과로 발생하였으나 현재에 인식되지 못한 의무

3) <부표 1> 참조

4) 알기쉬운 국제회계기준, 금융감독원, 2011

이와 같이 국제회계기준은 추상적으로 부채의 정의 및 인식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부채의 인식은 유동부채와 우발채무로 이루어지지만, 재정상태표와 주석에 부채를 평가하여 제시할 것을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나. 미국정부회계기준(GASB)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 연금에 대한 미국정부 회계기준(Statement No.25 of the Government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 GASB)는 결산보고서의 구성을 Paragraph 18~19에 제시하고 있고 부연설명을 Paragraph 75에 제시하고 있다. 결산보고서는 재무제표(Financial Statements)와 필수보충정보(Required Supplemental Information)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Notes to the Financial Statements)으로 되어있다.

(1) 재무제표(Financial Statements)

재무제표의 구성항목은 Paragraph 18~19에 제시되어 있으며, 계정에 대한 설명은 Paragraph 20~31에 제시되어 있다. 재무제표의 구성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기금순자산계산서(Statement of Plan Net Assets)

기금순자산계산서는 자산, 부채, 순자산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며, 각 계정은 공정가격(시장가격)으로 평가된다. 기금순자산계산서는 계리화된 기금운용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지 말 것을 규정하고 있다. 순자산에 대한 정보는 장기적 관점에서 평가되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기금순자산계산서는 자산, 부채 및 연금수탁보유 순자산(Net Assets held in Trust for Pension Benefits)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민연금기금의 국가회계 결산보고서의 재정상태표와 유사하다.

② 기금순자산변동계산서(Statement of Change in Plan Net Assets)

기금순자산변동계산서는 순자산의 변동원인을 제시하며 순자산의 변동은 계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기금순자산변동계산서는 자산의 증가원인(Additions)과 감소원인(Deductions)을 계리화하여 제시하고 있다. 국가회계 결산보고서의 재정운영표와 유사하다.

(2) 필수보충정보(Required Supplemental Information)

결산보고의 다른 요구항목으로 Paragraph 33는 필수보충정보계획(Schedule of Required Supplemental Information)을 보여주는데, Paragraph 112에 부연설명이 되어 있다. 필수보충정보는 미래의 기금상태에 대한 추세를 보여주는 것을 중점으로 하고 있으며, 시간에 따른 자산과 부채의 계리적 가치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는 것이 핵심이다. 필수보충정보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① 모수(Parameters)

모수항목에는 결산보고시 사용되는 계리적 방법론의 기본가정과 제약조건 등을 열거하고 있다. 모수항목은 계리적 가정(Actuarial Assumptions), 경제적 가정(Economics Assumptions), 계리적 비용 분석 방법(Actuarial Cost Method) 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② 적립개선일람표(Schedule of Funding Progress)

적립개선일람표에는 계리적으로 결정된 미래부채에 대한 현재할인과 적립기금과의 관계를 제시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적립개선일람표는 계리화된 자산과 부채, 적립률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③ 사업주기여일람표(Schedule of Employer Contributions)

사업주기여일람표는 기금적립의 출처에 대한 장기적 정보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사업자와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 비율을 제시한다. 또한 사업주의 기여에 대한 과거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3)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Notes to the Financial Statements)

Paragraph 32는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Notes to the Financial Statements)을 제시한다. 주석은 기금의 사업주를 설명하는 기금설명(Plan Description), 중요한 회계정책의 요약, 기여금과 준비금(Contributions and Reserves) 및 운용투자집중(Concentrations)으로 구성되며 주석은 재무제표 바로 뒤에 연결되어야 한다.

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州) 공무원연금 회계기준

미국 캘리포니아 주 공무원 연금(CalPERS: California Public Employees' Retirement System) 회계기준 통합재무제표는 순수탁자산 변동보고서, 순수탁자산보고서 및 순자산&비용변동표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금부채에 대해서는 적립개선일람표(Schedule of Funding Progress) 부문에 자산과 부채의 현재가치를 계리화하여 제시하고 있다. 또한 계리부문(Actuarial Section)에 자산계리가치, 연금부채의 계리가치 및 계리화된 적립률(Funded Ratio)등을 통해 연금부채를 명확하게 추정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 회계기준은 필수보충정보(Required Supplemental Information)에 적립개선일람표(Schedule of Funding Progress)를 따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결산보고서에 계리부문(Actuarial Section)을 따로 구분하여 연금부채를 인식하는 판단기준을 규정해 놓았는데, 연금부채는 경제학적 가정과 비경제학적 가정 하에 인식되며, 자산의 계리가치는 연금기금의 기대가치(Expected Value of Assets)와 연금기금의 실제 시장가치(Actual Market Value of Assets)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계리적으로 인식된 연금부채는 시장가치 기준으로 평가된 후, 적립률(Funded Ratio)⁵⁾을 도출하게 된다.

5) (자산의 계리가치)÷(부채의 계리가치) : 부채대비 자산보유비율

5. 해외 주요국의 공적연금 재정평가 방법

가. 미국 OASDI(Old-Age, Survivors and Disability Insurance) Annual Report

미국 OASDI Annual Report는 총 7개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재정평가와 관련된 부분은 'IV. Actuarial Estimates'에서 다루고 있으며 재정추계는 단기재정추계(10년)과 장기추계(75년)로 구분된다.

재정추계를 통한 재정안정목표는 명문화된 것이 없으며 단기전망과 장기전망으로 구분하여 다양한 지표로 재정건전성을 보여주고 있다.

(1) 단기전망(Short-Range Estimates)의 평가지표

① 적립배율(Trust Fund Ratios)

단기전망은 향후 10년을 내다보는 것으로 중간가정(Intermediate), 저위가정(Low-cost), 그리고 고위가정(High-cost)으로 분리하여 전망하고 있다. 단기전망에서 사용되는 평가지표는 적립배율⁶⁾(Trust Fund Ratio)이다.

(2) 장기전망

장기전망에서는 연간수지차, 가입자 100명당 수급자수, 적립배율, 계리적수지차, 미적립부채, 세대별미적립부채 등을 평가지표로 사용하고 있다.

① 연간수입비율, 연간지출비율, 연간수지차(Income rate, Cost rate, Balance)

연간수입비율(Income rate)은 연간 보험료부과 대상 소득총액 대비 연간 총수입(보험료수입 등)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이고, 연간지출비율(Cost rate)은 연간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 총액 대비 연간 총 지출(급여지출 등)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연간수지차는 수입비율과 지출비율의 격차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6) 회계연도초 연금자산대비 당해 연도 연금지출비율

〈표 4〉 미국 OASDI의 연간수입비율, 지출비율, 연간수지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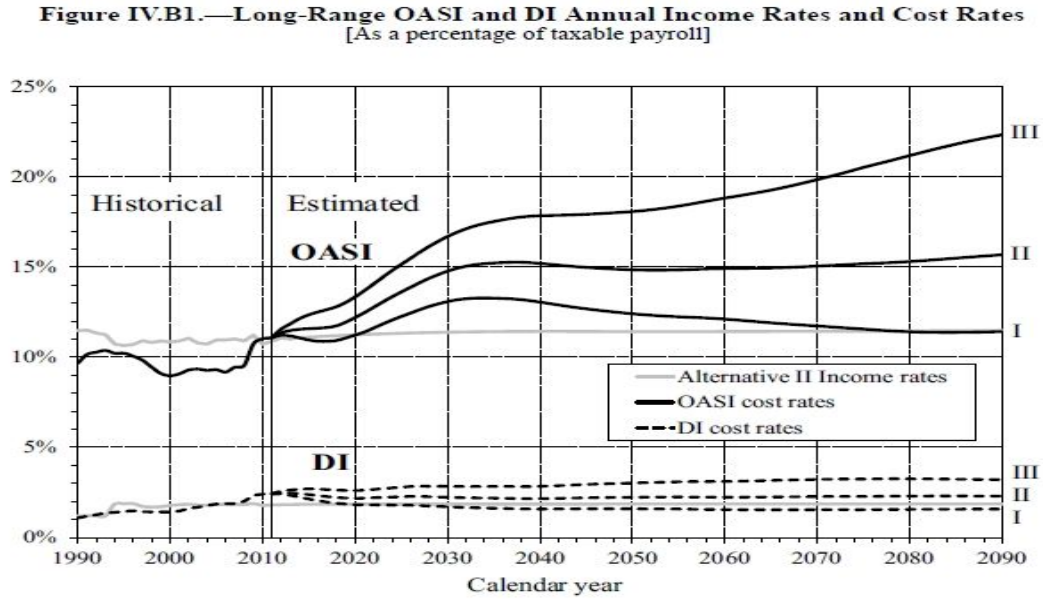
**Table IV.B1.—Annual Income Rates, Cost Rates, and Balances,
Calendar Years 1990-2090**
[As a percentage of taxable payroll]

Calendar year	OASI			DI			OASDI		
	Income rate ^a	Cost rate	Balance	Income rate ^a	Cost rate	Balance	Income rate ^a	Cost rate	Balance
Historical data:									
1990.....	11.47	9.66	1.82	1.18	1.09	0.10	12.66	10.74	1.91
1995.....	10.64	10.22	.42	1.87	1.44	.43	12.51	11.67	.85
2000.....	10.84	8.97	1.87	1.78	1.42	.36	12.62	10.40	2.23
2001.....	10.90	9.08	1.82	1.82	1.48	.35	12.72	10.55	2.17
2002.....	11.05	9.29	1.76	1.84	1.60	.24	12.90	10.89	2.01
2003.....	10.78	9.34	1.44	1.80	1.68	.12	12.59	11.03	1.56
2004.....	10.73	9.27	1.46	1.79	1.77	.02	12.52	11.05	1.48
2005.....	10.96	9.31	1.65	1.84	1.85	-.02	12.79	11.16	1.63
2006.....	10.96	9.18	1.78	1.83	1.88	-.05	12.79	11.06	1.73
2007.....	11.02	9.45	1.57	1.84	1.88	-.04	12.86	11.33	1.53
2008.....	10.90	9.53	1.37	1.83	2.01	-.19	12.73	11.55	1.18
2009.....	11.22	10.73	.49	1.88	2.31	-.43	13.10	13.04	.06
2010.....	10.73	11.03	-.30	1.79	2.41	-.62	12.51	13.44	-.92
2011.....	10.88	11.09	-.21	1.81	2.43	-.62	12.68	13.52	-.83
Intermediate:									
2012.....	11.07	11.35	-.27	1.82	2.48	-.66	12.89	13.83	-.93
2013.....	11.00	11.48	-.48	1.83	2.47	-.64	12.83	13.95	-1.12
2014.....	11.09	11.55	-.46	1.84	2.43	-.59	12.93	13.98	-1.05
2015.....	11.11	11.58	-.47	1.84	2.38	-.54	12.95	13.97	-1.01
2016.....	11.14	11.61	-.47	1.84	2.33	-.48	12.98	13.94	-.96
2017.....	11.16	11.65	-.49	1.84	2.27	-.42	13.01	13.91	-.91
2018.....	11.19	11.74	-.56	1.85	2.22	-.37	13.03	13.96	-.93
2019.....	11.21	11.94	-.74	1.85	2.19	-.34	13.05	14.13	-1.08
2020.....	11.23	12.20	-.97	1.85	2.18	-.33	13.07	14.37	-1.30
2021.....	11.26	12.47	-1.21	1.85	2.19	-.34	13.11	14.65	-1.55
2025.....	11.33	13.62	-2.29	1.85	2.26	-.41	13.18	15.88	-2.70
2030.....	11.39	14.77	-3.38	1.85	2.23	-.38	13.25	17.01	-3.76
2035.....	11.42	15.22	-3.80	1.85	2.19	-.33	13.28	17.41	-4.13
2040.....	11.43	15.20	-3.77	1.85	2.16	-.30	13.28	17.36	-4.07
2045.....	11.42	14.98	-3.56	1.86	2.20	-.35	13.28	17.19	-3.91
2050.....	11.42	14.85	-3.43	1.86	2.23	-.37	13.27	17.08	-3.81
2055.....	11.42	14.84	-3.42	1.86	2.25	-.39	13.28	17.09	-3.81
2060.....	11.43	14.92	-3.49	1.86	2.24	-.38	13.28	17.16	-3.87
2065.....	11.43	14.95	-3.52	1.86	2.25	-.39	13.29	17.20	-3.91
2070.....	11.44	15.05	-3.62	1.86	2.27	-.41	13.30	17.33	-4.03
2075.....	11.45	15.18	-3.74	1.86	2.28	-.42	13.31	17.46	-4.16
2080.....	11.45	15.31	-3.85	1.86	2.30	-.44	13.32	17.60	-4.29
2085.....	11.47	15.49	-4.03	1.86	2.30	-.44	13.33	17.79	-4.47
2090.....	11.48	15.68	-4.21	1.86	2.30	-.44	13.34	17.98	-4.64
First year balance becomes negative and remains negative through 2090									
			2010			2005			2010

자료: 『The 2012 Annual Report of the Board of Trustees of the Federal OASDI Trust Fund』 OASDI Trust Fund 2012

이 지표를 통해 최초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시점이 언제이고 장기적인 추세가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를 점검하고 있다. Income rate과 Cost rate를 지표로 사용하는 것은 해당 연도 수입으로 지출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기 위한 것으로 부과방식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미국 OASDI는 2010년 이후 Balance 가 마이너스(-)로 전환된 이후 2090년 까지 지속적으로 규모가 증가하고 있어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 미국 OASDI의 연간수입비율, 지출비율, 연간수지차의 추세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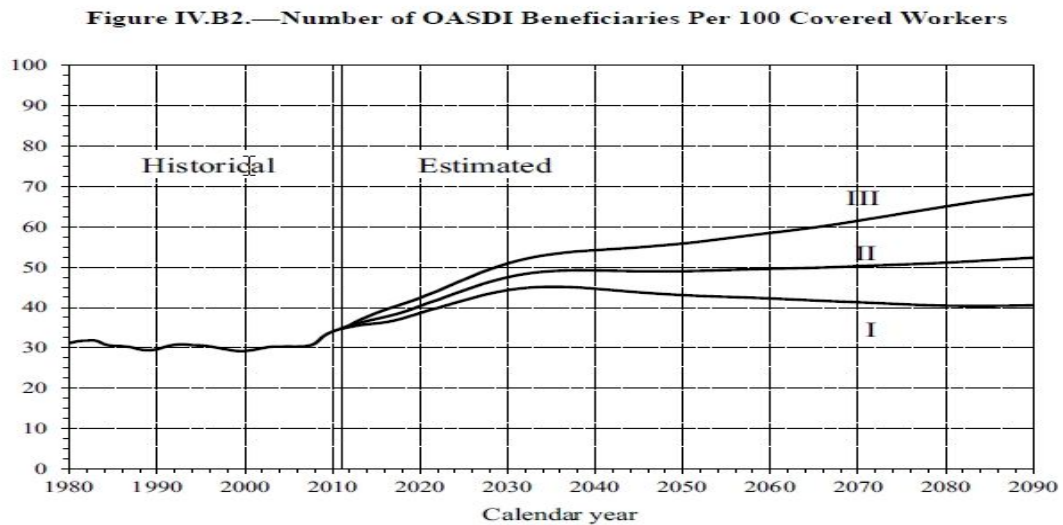


자료: 『The 2012 Annual Report of the Board of Trustees of the Federal OASDI Trust Fund』 OASDI Trust Fund 2012

② 가입자 100명당 수급자수

가입자 100명당 수급자수는 부과방식하에서 인구구조에 의한 부양비의 변화추이를 평가해 보기 위한 지표이다. 이 지표 또한 부과방식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지를 점검하는 지표로 저출산·고령화의 문제가 심각한 우리나라에도 시사점이 있는 지표로 평가된다.

[그림 2] OASDI의 가입자 100명당 수급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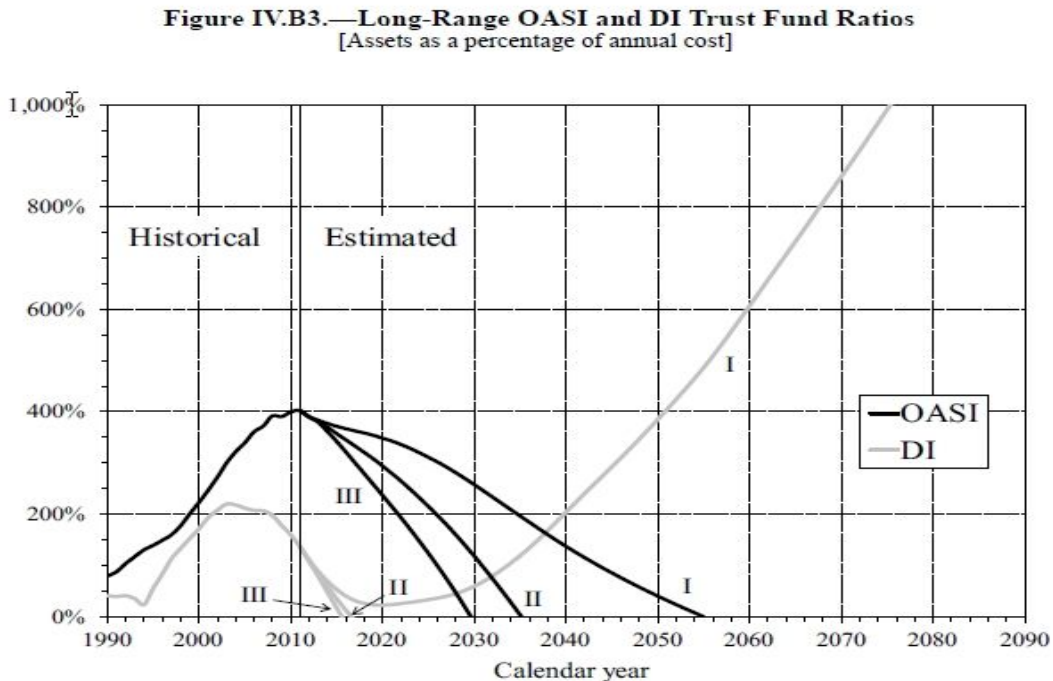


자료: 『The 2012 Annual Report of the Board of Trustees of the Federal OASDI Trust Fund』 OASDI Trust Fund 2012

③ 적립배율(Fund Ratio)

적립배율은 연초 연금자산의 당해 연도 급여지출대비 비중을 나타낸다. 적립배율은 연초 연금자산의 당해 연도 급여지출대비 비중을 나타낸다. 적립배율이 점차 감소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기금이 소진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또한 적립배율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면 연금제도가 적어도 지급능력면에서는 지속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미국 OASDI는 고비용추계에 의하면 2030년 적립배율이 0%로 하락하고 저비용추계는 2055년 경 적립배율이 0%로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림 3] OASDI 적립배율 장기전망



자료: 『The 2012 Annual Report of the Board of Trustees of the Federal OASDI Trust Fund』 OASDI Trust Fund 2012

④ 계리적수지차(Actuarial Balance)

계리적 수지차는 연간수입비율(Income rate)과 연간지출비율(Cost rate)의 누적개념을 포함하여 재정의 차이를 계산한 것이다. 2085년까지 계산된 계리적수지차는 2085년까지 계산된 총지출이 총수입을 초과하는 금액을 과세대상소득총액으로 나눈 값이다. 2085년까지의 계리적수지차 -2.67%는 2085년까지의 미적립부채 8조 6천억 달러와 상응하는 수치이다.

〈표 5〉 OASDI 중위가정하의 계리적 수치차

Table IV.B5.—Components of 75-Year Actuarial Balance Under Intermediate Assumptions

Item	OASI	DI	OASDI
Present value as of January 1, 2012 (in billions):			
A. Payroll tax revenue	\$36,035	\$6,119	\$42,154
B. Reimbursements from general revenue	96	16	113
C. Taxation of benefits revenue	2,730	202	2,931
D. Non-interest income (A + B + C)	38,861	6,337	45,198
E. Cost	48,797	7,680	56,477
F. Cost minus non-interest income (E - D)	9,936	1,343	11,278
G. Trust fund assets at start of period	2,524	154	2,678
H. Open group unfunded obligation (F - G)	7,412	1,189	8,601
I. Ending target trust fund ^a	436	64	501
J. Income minus cost, plus assets at start of period, minus ending target trust fund (D - E + G - I = - H - I)	-7,848	-1,253	-9,101
K. Taxable payroll	341,465	341,465	341,465
Percent of taxable payroll:			
Actuarial balance ($100 \times J \div K$)	-2.30	-.37	-2.67

^a The calculation of the actuarial balance includes the cost of accumulating a target trust fund balance equal to 100 percent of annual cost at the end of the period.

Note: Totals do not necessarily equal the sums of rounded components.

자료: 『The 2012 Annual Report of the Board of Trustees of the Federal OASDI Trust Fund』 OASDI Trust Fund 2012

⑤ 미적립부채(Unfunded Obligation)- 2086년 & 무한대

미적립부채는 추계기간말인 2086년까지의 규모와 무한기간에 대한 규모로 나누어 추계하고 있다. 2086년까지의 미적립부채는 8.6조 달러로 GDP대비 0.9%로 계산되고 있다.

〈표 6〉 OASDI 중위가정하의 추계기간별 미적립부채

Table IV.B6.—Unfunded OASDI Obligations Through the Infinite Horizon, Based on Intermediate Assumptions
[Present values as of January 1, 2012; dollar amounts in trillions]

	Present value	Expressed as a percentage of future payroll and GDP	
		Taxable payroll	GDP
Unfunded obligation through the infinite horizon ^a	\$20.5	3.9	1.3
Unfunded obligation through 2086 ^b	8.6	2.5	.9

^a Present value of future cost less future non-interest income, reduced by the amount of trust fund assets at the beginning of 2012. Expressed as a percentage of payroll and GDP for the period 2012 through the infinite horizon.

^b Present value of future cost less future non-interest income through 2086, reduced by the amount of trust fund assets at the beginning of 2012. Expressed as a percentage of payroll and GDP for the period 2012 through 2086.

Notes:

1. The present values of future taxable payroll for 2012-86 and for 2012 through the infinite horizon are \$341.5 trillion and \$530.2 trillion, respectively.

2. The present values of GDP for 2012-86 and for 2012 through the infinite horizon are \$947.8 trillion and \$1,569.1 trillion, respectively. Present values of GDP shown in the Medicare Trustees Report differ slightly due to the use of interest discount rates that are specific to each program's trust fund holdings.

자료: 『The 2012 Annual Report of the Board of Trustees of the Federal OASDI Trust Fund』 OASDI Trust Fund 2012

⑥ 세대별 무한기간 미적립부채(Unfunded Obligation-Infinite Horizon)의 규모

연금재정의 수입과 지출의 현재가치를 과거와 현재에서 유래한 금액과 미래세대에서 유래한 금액으로 구분하여 계산한 내용이다. 과거와 현재가입자에 의한 미적립부채는 21.6 조 달러이나 미래가입자에 의한 수입이 지출보다 1.2조 달러 초과하여 무한대 미적립부채는 20.5조 달러로 계산되었다. 이러한 계산은 세대간 회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현 세대가입자의 수입과 지출에서 불균형이 심하게 나타나 미적립부채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과거세대의 수입과 지출은 47.8조 달러 대비 45.5조 달러로 미적립부채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현재대의 경우 수입은 23.5조 달러인 반면 지출은 47.9조 달러로 22.2조 달러의 미적립부채가 발생하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표 7〉 OASDI 중위가정하의 세대간 회계

Table IV.B7.—Present Values of OASDI Cost Less Non-interest Income and Unfunded Obligations for Program Participants, Based on Intermediate Assumptions
[Present values as of January 1, 2012; dollar amounts in trillions]

	Present value	Expressed as a percentage of future payroll and GDP	
		Taxable payroll	GDP
Present value of past cost	\$45.5	8.6	2.9
Less present value of past dedicated tax income	47.8	9.0	3.0
Plus present value of future cost for current participants	47.9	9.0	3.1
Less present value of future dedicated tax income for current participants	23.5	4.4	1.5
Equals unfunded obligation for past and current participants excluding general fund reimbursements	22.2	4.2	1.4
Less present value of past general fund reimbursements ^a	.4	.1	^b
Less present value of future general fund reimbursements over the infinite horizon ^a	.1	^c	^b
Equals unfunded obligation for past and current participants including general fund reimbursements	21.6	4.1	1.4
Plus present value of cost for future participants over the infinite horizon	45.9	8.7	2.9
Less present value of dedicated tax income for future participants over the infinite horizon	47.0	8.9	3.0
Equals unfunded obligation for all participants through the infinite horizon	20.5	3.9	1.3

^a Distribution of general fund reimbursements among past, current, and future participants cannot be determined.

^b Less than 0.05 percent of GDP.

^c Less than 0.05 percent of taxable payroll.

Notes:

1. The present value of future taxable payroll for 2012 through the infinite horizon is \$530.2 trillion.

2. The present value of GDP for 2012 through the infinite horizon is \$1,569.1 trillion.

3. Totals do not necessarily equal the sums of rounded components.

자료: 『The 2012 Annual Report of the Board of Trustees of the Federal OASDI Trust OASDI Trust Fund 2012』

나. 캐나다 CPP(Canada Pension Plan)의 재정추계보고서(Actuarial Report 2010)

CPP는 향후 75년에 대해 재정추계를 하고 있으며 재정추계보고서는 총 8개장과 5개의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재정평가와 관련된 내용은 'IV. Results'에서 다루고 있으며 평가 지표는 적립배율(Asset/Expenditure ratio)과 부과전환보험료율(PayGo Rate)을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 부록(Appendix A: Financing the Canada Pension Plan)은 계리적부채(Actuarial Liability)를 연금자산에서 뺀 미적립부채(Unfunded Liability)를 제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당해 연도에 획득한 미래급여의 가치(Current Service Cost), 적립률(Funding Ratio), 계리적수지차(Actuarial Balance) 등을 지표로 제시하고 있다. 캐나다 CPP 재정지표의 특징은 코호트별 내부수익률(Internal Rates of Return by Cohort)을 계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캐나다는 1998년 법개정으로 부과방식에서 벗어나 신규로 제정되는 급여는 완전적립으로 운영하고 적립배율 5배 수준 또는 적립률 25%에 해당하는 기금자산을 추계시점 이후 10~60년 동안 유지하는 재정목표로 정하고 있다.

〈표 8〉 캐나다 CPP의 재정평가지표

목차	본문 : IV. Results	부록 : A
평가지표	적립배율 부과전환 보험료율	미적립 부채 계리적수지차 Current Service Cost 코호트별 내부수익률

자료: 『Actuarial Report 25th on the Canada Pension Plan 2010』, Office of the Chief Actuary, CPP, Canada

(1) 기본평가지표

① 적립배율 및 부과방식전환보험료율

캐나다 CPP는 적립배율을 'Asset/Expenditure Ratio'로 표현하고 있으며 부과전환보험료율은 'PayGo Rate'로 기술하고 있다. 법으로 보험료율 상한선을 9.9%로 설정해 놓았기 때문에 부과방식전환보험료율이 9.9%보다 높은 경우 소득대체율의 조정을 통해 재정안정을 도모할 수밖에 없다.

〈표 9〉 캐나다 CPP의 재정현황지표

Table 11 Financial Status
(\$ mill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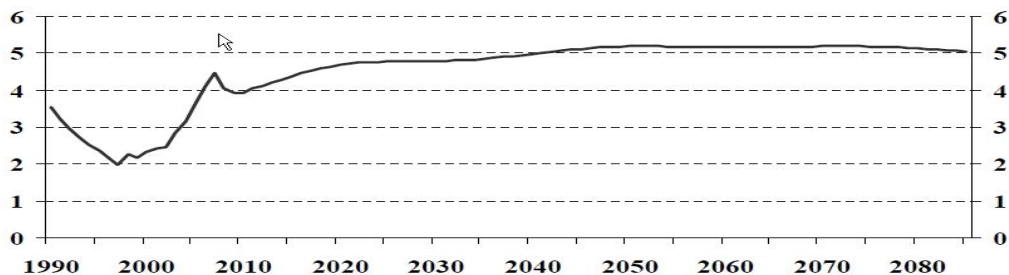
Year	PayGo Rate	Contribution Rate	Contributory Earnings	Contributions	Expenditures	Net Cash Flow	Investment Income ⁽¹⁾	Assets at 31 Dec.	Return	Asset/Expenditure Ratio
	(%)	(%)							(%)	
2010	8.65	9.90	372,340	36,862	32,192	4,670	2,391	133,897	1.80	3.94
2011	8.80	9.90	386,384	38,252	33,992	4,260	7,268	145,425	5.20	4.04
2012	8.87	9.90	406,151	40,209	36,016	4,193	8,438	158,056	5.58	4.13
2013	9.06	9.90	422,153	41,793	38,255	3,538	9,112	170,705	5.56	4.21
2014	9.24	9.90	438,529	43,414	40,518	2,896	9,862	183,464	5.59	4.29
2015	9.40	9.90	455,598	45,104	42,809	2,295	11,571	197,330	6.12	4.37
2016	9.51	9.90	474,216	46,947	45,113	1,834	12,367	211,532	6.10	4.46
2017	9.60	9.90	494,453	48,951	47,456	1,495	13,225	226,251	6.09	4.53
2018	9.67	9.90	516,668	51,150	49,961	1,189	14,341	241,781	6.18	4.59
2019	9.75	9.90	540,315	53,491	52,671	820	15,476	258,077	6.25	4.64
2020	9.83	9.90	565,486	55,983	55,608	375	16,646	275,099	6.31	4.68
2021	9.93	9.90	591,677	58,576	58,733	(157)	17,753	292,695	6.32	4.72
2022	10.05	9.90	616,844	61,068	62,014	(946)	18,857	310,605	6.32	4.74
2023	10.19	9.90	642,678	63,625	65,461	(1,836)	19,975	328,744	6.32	4.76
2024	10.31	9.90	669,652	66,296	69,062	(2,766)	21,093	347,070	6.31	4.77
2025	10.43	9.90	697,860	69,088	72,782	(3,694)	22,303	365,680	6.33	4.77
2026	10.54	9.90	727,080	71,981	76,599	(4,618)	23,504	384,566	6.34	4.78
2027	10.61	9.90	758,553	75,097	80,497	(5,400)	24,704	403,869	6.34	4.78
2028	10.68	9.90	791,300	78,339	84,492	(6,153)	25,924	423,640	6.34	4.78
2029	10.74	9.90	824,784	81,654	88,601	(6,947)	27,160	443,853	6.34	4.78
2030	10.78	9.90	860,535	85,193	92,803	(7,610)	28,444	464,687	6.34	4.79
2031	10.82	9.90	897,069	88,810	97,085	(8,275)	29,764	486,176	6.34	4.79
2032	10.84	9.90	935,825	92,647	101,438	(8,791)	31,129	508,514	6.33	4.80
2033	10.84	9.90	976,463	96,670	105,876	(9,206)	32,554	531,861	6.33	4.82
2034	10.84	9.90	1,018,855	100,867	110,430	(9,563)	34,035	556,333	6.33	4.83
2035	10.83	9.90	1,063,407	105,277	115,130	(9,853)	35,542	582,023	6.32	4.85
2036	10.81	9.90	1,109,723	109,863	119,997	(10,134)	37,170	609,058	6.32	4.87
2037	10.80	9.90	1,158,133	114,655	125,031	(10,376)	38,891	637,573	6.32	4.90
2038	10.77	9.90	1,208,981	119,689	130,231	(10,542)	40,701	667,732	6.31	4.92
2039	10.75	9.90	1,261,488	124,887	135,631	(10,744)	42,634	699,622	6.31	4.95
2040	10.73	9.90	1,315,993	130,283	141,263	(10,980)	44,686	733,329	6.31	4.98
2045	10.75	9.90	1,617,807	160,163	173,945	(13,782)	56,742	929,721	6.33	5.12
2050	10.94	9.90	1,973,718	195,398	215,909	(20,511)	71,427	1,169,230	6.33	5.18
2055	11.15	9.90	2,403,391	237,936	267,882	(29,946)	88,477	1,446,259	6.33	5.18
2060	11.22	9.90	2,937,762	290,838	329,666	(38,828)	108,321	1,769,492	6.33	5.15
2065	11.17	9.90	3,608,577	357,249	403,101	(45,852)	132,554	2,166,125	6.33	5.16
2070	11.12	9.90	4,436,956	439,259	493,461	(54,202)	162,997	2,664,808	6.33	5.18
2075	11.17	9.90	5,435,534	538,118	606,938	(68,820)	200,536	3,277,586	6.33	5.18
2080	11.28	9.90	6,634,126	656,778	748,226	(91,448)	245,115	4,002,277	6.33	5.13
2085	11.40	9.90	8,087,024	800,615	921,603	(120,988)	296,556	4,835,939	6.33	5.03

(1) Investment income includes both realized and unrealized gains and losses.

자료: 『Actuarial Report 25th on the Canada Pension Plan 2010』, Office of the Chief Actuary, CPP, Canada

적립배율을 나타내는 ‘Asset/Expenditure Ratio’는 2050년 5.18배로 상승하나 2085년까지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4] 캐나다 CPP의 적립배율

Chart 2 Asset/Expenditure Ratio
(9.9% contribution rate)

자료: 『Actuarial Report 25th on the Canada Pension Plan 2010』, Office of the Chief

(2) 기타평가지표

① Balance Sheet

①-1 폐쇄집단 미적립부채

폐쇄집단 미적립부채는 현시점을 기준으로 더 이상의 기여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정한 상태에서 미적립부채를 계산하는 방식이다. 미적립부채가 향후 10년 동안 안정적인 수준으로 유지되는지를 가늠해 보기 위해 2009년과 2019년의 미적립부채와 미적립률을 비교하고 있다. 2009년의 미적립률은 85.5%이나 2019년의 미적립률은 80.3%로 감소하여 향후 10년간 재정건전성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표 10〉 캐나다 CPP의 폐쇄집단 가정하의 미적립부채

	2009년 12월 31일 기준		2019년 12월 31일 기준	
	금액 (십억 캐나다 달러)	부채대비 비중 (%)	금액 (십억 캐나다 달러)	부채대비 비중 (%)
보험계리적 부채	874.8	100.0	1,308.9	100.0
자산	126.8	14.5	258.1	19.7
미적립부채	748.0	85.5	1,050.8	80.3

자료: 『Actuarial Report 25th on the Canada Pension Plan 2010』, Office of the Chief Actuary, CPP, Canada

①-2 개방집단 미적립부채

개방집단 미적립부채는 재정추계기간인 75년 동안 즉, 2085년까지 가입자가 제도에 가입하는 것을 가정한 상태에서, 이들 가입자들에게 지급해야하는 급여총액을 계산하고 2085년까지의 기금자산과 비교하여 미적립부채규모를 계산하는 방식이다. CPP의 개방집단 미적립부채는 폐쇄형 미적립부채 보다 크게 감소하여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1〉 캐나다 CPP의 개방집단 가정하의 미적립부채

	2009년 12월 31일 기준		2019년 12월 31일 기준	
	금액 (십억 캐나다 달러)	부채대비 비중 (%)	금액 (십억 캐나다 달러)	부채대비 비중 (%)
보험계리적 부채	1,995.0	100.0	2,836.9	100.0
자산	1,988.1	99.7	2,825.3	99.6
미적립부채	6.9	0.3	11.6	0.4

자료: 『Actuarial Report 25th on the Canada Pension Plan 2010』, Office of the Chief Actuary, CPP, Canada

② Current Service Cost

2010년 현재 가입하고 있는 가입자들이 한해동안 획득한 미래급여의 규모를 Current Service Cost로 계산하고 있다. Current Service Cost를 기여대상소득의 비율로 계산하고 이 수준을 현재의 보험료수준과 비교하면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지표로 사용될 수 있다. CPP의 현재 보험료율이 9.82%이고 Current Service Cost의 부과대상소득대비 비율은 6.31%이므로 제도가 당해연도 수지흑자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Current Service Cost가 보험료율 보다 높다면 당해연도 수지적자를 내고 있다는 것이다.

〈표 12〉 캐나다 CPP의 Current Service Cost

12월 말 기준	Current Service Cost (십억 캐나다 달러) (A)	보험료부과대상 소득총액 (십억 캐나다 달러) (B)	A/B (%)
2010	23.5	372.3	6.31
2011	23.9	386.4	6.20
2012	25.4	406.2	6.26

자료: 『Actuarial Report 25th on the Canada Pension Plan 2010』, Office of the Chief Actuary, CPP, Canada

③ 코호트별 내부수익률

현재수급자, 현재가입자, 그리고 미래가입자의 내부수익률을 계산하여 제시하고 있다. 1940년생의 내부수익률은 6.3%로 1970년생의 내부수익률 2.4%에 비해 3.9%p 높다. 즉, 코호트별 내부수익률은 세대간부양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사용되고 있다. 캐나다 CPP의 코호트별 내부수익률은 1970년생 이후 2.3% 수준을 유지하여 더 이상 세대간 전가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3〉 캐나다 CPP의 인구 코호트별 내부수익률

출생년도	명목 내부수익률	실질내부수익률
1940	10.4	6.3
1950	7.1	4.2
1960	5.3	3.0
1970	4.7	2.4
1980	4.6	2.3
1990	4.6	2.2
2000	4.6	2.3

자료: 『Actuarial Report 25th on the Canada Pension Plan 2010』, Office of the Chief Actuary, CPP, Canada

다. 미국 CalPERS의 포괄적 재무제표(Comprehensive Annual Financial Report)

미국 캘리포니아주 공무원연금제도인 CalPERS는 재무제표 내에 Actuarial Section을 두고 재정추계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재정추계는 현시점을 기준으로 Funding Progress를 점검하기 위해 미적립부채와 적립률, 그리고 solvency test를 실시하고 있다. CalPERS는 100% 적립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보험료부과기준 대비 보험료율을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고 있다.

(1) 미적립부채와 적립률

2010년 6월 기준 회계연도 미적립부채는 3,083 억불이고 기금자산규모는 2,016억불로 기금의 적립률은 65.4%로 계산되었다. CalPERS는 완전적립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해 기금자산의 시장가치가 하락함에 따라 적립률이 감소하였다. 금융시장의 등락으로 인해 기금자산의 평가금액이 크게 변동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 기금자산규모를 시가기준(Market Value of Assets)과 추계기준(Actuarial Value of Asset)으로 구분하여 계산하고 있다. 추계기준 기금자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적립률은 2003년 87.7%에서 2007년 87.2%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09년과 2010년은 금융위기에따라 인해 적립률이 다소 감소하여 83%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기금자산을 시가기준으로 계산한 적립률은 2003년 79.8%에서 2004년 85.9%, 2005년 89.9%, 2006년 92.6%, 2007년 101.2%를 보이다가 2009년은 60.8%로 급격히 하락하는 것을 알 수 있다(〈부표 2〉 참조).

(2) 지불능력평가(Solvency Test)

CalPERS는 미국정부회계기준(GASB)에 의해 지불능력평가를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급여를 지불할 능력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solvency test는 연금부채를 ①현재가입자가 이미 기여한 보험료에 의해 발생한 미래급여부채, ②현재 수급자에게 지불해야하는 연금급여부채, ③현재가입자의 고용주가 기여한 보험료에 의해 획득한 미래급여부채 등으로 구분하고, 이들 부채를 기금자산이 어느 정도 충당하는 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2010년 6월 기준으로 기금자산(추계기준⁷⁾)은 257.1(십억불)이고 2010회계연도 현재가입하고 있는 가입

7) 추계기준 기금자산가치와 시가기준 기금자산가치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추계기준은 금융시장의 등락으로 인해 보험료율조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금의 수익률을 시가기준이 아닌 기대수익(과거 수익률 평균)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가 기여한 보험료에 의해 발생한 미래급여부채 40.6(십억불)을 100% 감당하고, 현재 수급자에게 지불해야하는 급여부채 160.2(십억불) 또한 100% 감당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가입자에 대해 고용주들이 기여한 보험료에 의해 발생한 미래급여부채에 대해서는 52.3%만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CalPERS는 미적립부채를 30년 이내에 해소한다는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부표 3〉 참조).

라. 일본 후생연금의 재정검증결과

일본후생연금은 매 5년마다 재정검증을 실시하고 있으며 일본후생연금은 2004년 법개정을 통해 무한기간 수지균등이라는 재정목표를 추계시점 이후 100년간 재정안정으로 변경하였다. 이러한 목표를 위해 2017년까지 보험료율을 18.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60%(2004년 기준)에서 50%(2038년)로 삭감하는 제도개선을 시행하였다. 재정검증은 이러한 제도개선내용이 인구·거시변수가정하에 장기적으로 어떤 추이를 보이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다. 추계기간말에 기금이 고갈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인 재정안정목표이다.

재정검증보고서는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본평가지표는 제 1장 내의 연금재정의 장래전망에서 적립금추이와 적립배율을 계산하여 제시하고 있다.

기타평가지표는 ‘제 4장 기타’에서 세대간급부와 부담비율과 급부와 재원의 내역이라는 제목하에 Balance Sheet를 제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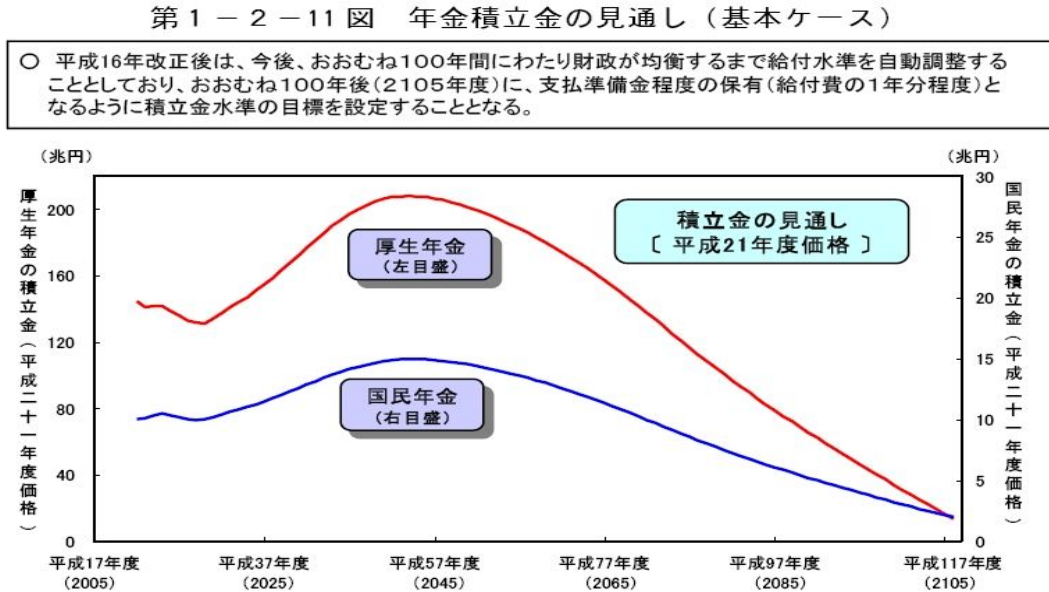
(1) 기본평가지표

재정검증보고서는 어떤 지표가 기본평가지표인지 또는 기타평가지표인지를 기술하지 않고 있다. 다만 본 고에서는 재정검증보고서가 ‘제1장 재정검증개요’ 내의 연금재정장래전망에서 제시하고 있는 적립금추이와 적립배율을 기본평가지표로, 그리고 ‘제4장 기타’에서 제시하고 있는 세대간급부와 부담비율 그리고 급부와 재원의 내역(Balance Sheet)을 기타지표로 구분하였다.

① 적립금추이

적립금은 2009년 가격기준으로 2040년 207.5조엔으로 최고수준으로 보이다가 2105년에는 13.2조엔으로 크게 감소하여 고갈수준에 도달하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림 5] 일본 후생연금의 적립금 추이



자료: 『平成21年 재정검정결과 리포트』 노동후생성연금수리과 2010.3

② 적립배율

적립배율은 2050년 6배로 가장 높은 수준에 있다가 2105년에는 1배로 감소하고 있다. 적립배율을 2105년에 1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국고지원금에 의해 가능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2) 기타평가지표

① 세대간부양 규모

현수급자, 현재가입자, 그리고 미래가입자를 5세 간격으로 이들이 부담하는 보험료총액과 연금급여총액을 일정시점의 현가로 환산하여 배율을 계산한 것이다.

예를 들어, 1940년생은 현재 수급자이며 이들 세대가 평균으로 부담한 보험료총액의 배수를 계산하면 6.5이나 1960년생은 이 배수가 2.9 그리고 1970년생은 2.5로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이후 2010년생의 배수는 2.3으로 40년 동안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14〉 일본후생연금 인구코호트별 보험료부담대비 연금급여비율

2010년 기준연령	후생연금(기초연금포함)				
	보험료부담액 (A) (만엔)	연금급부액 (B) (만엔)	배율 (B/A)	65세 이후 수령 연금급부액 (B-A) (만엔)	배율 (B-A)/A
70세 - 1940년생 (2005년 시점 환산)	900 (900)	5,500 (5,600)	6.5	4,300 (4,400)	5.1
65세 - 1945년생 (2010년 시점 환산)	1,000 (1,000)	4,800 (4,800)	4.7	4,000 (4,000)	3.9
60세 - 1950년생 (2015년 시점 환산)	1,300 (1,200)	5,200 (4,700)	3.9	4,600 (4,200)	3.4
55세 - 1955년생 (2020년 시점 환산)	1,700 (1500)	5,600 (4,900)	3.3	5,200 (4,500)	3.1
50세 - 1960년생 (2025년 시점 환산)	2,200 (1,800)	6,200 (5,100)	2.9	6,100 (5,000)	2.8
45세 - 1965년생 (2030년 시점 환산)	2,700 (2,100)	7,100 (5,600)	2.7	7,100 (5,600)	2.7
40세 - 1970년생 (2035년 시점 환산)	3,200 (2,400)	8,000 (5,900)	2.5	8,000 (5,900)	2.5
35세 - 1975년생 (2040년 시점 환산)	3,800 (2,700)	9,100 (6,400)	2.4	9,100 (6,400)	2.4
30세 - 1980년생 (2045년 시점 환산)	4,500 (3,000)	10,400 (7,000)	2.3	10,400 (7,000)	2.3
25세 - 1985년생 (2050년 시점 환산)	5,200 (3,300)	11,900 (7,600)	2.3	11,900 (7,600)	2.3
20세 - 1990년생 (2055년 시점 환산)	5,900 (3,600)	13,600 (8,300)	2.3	13,600 (8,300)	2.3
15세 - 1995년생 (2060년 시점 환산)	6,800 (3,900)	15,500 (9,000)	2.3	15,500 (9,000)	2.3
10세 - 2000년생 (2065년 시점 환산)	7,700 (4,200)	17,600 (9,700)	2.3	17,600 (9,700)	2.3
5세 - 2005년생 (2070년 시점 환산)	8,700 (4,600)	19,900 (10,400)	2.3	19,900 (10,400)	2.3
0세 - 2010년생 (2075년 시점 환산)	9,800 (4,900)	22,500 (11,200)	2.3	22,500 (11,200)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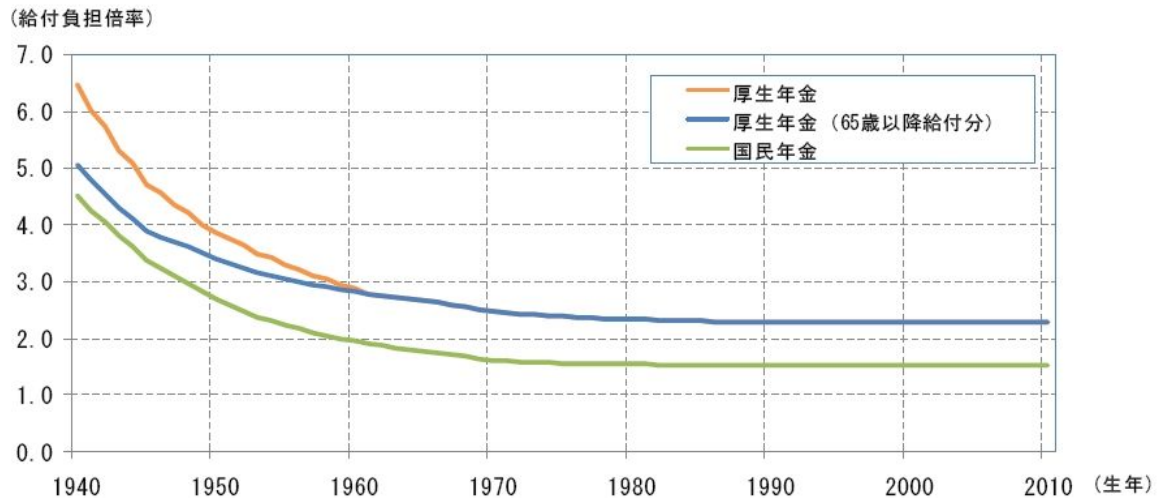
주: 괄호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현재가치환산 금액(2010년 기준)

자료: 『평성21년 재정검정결과 리포트』 노동후생연금수리과 2010.3

이와 같은 배수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 아래 그래프이다.

[그림 6] 인구코호트별 수익비

第4-1-5図 世代ごとの給付負担倍率の推移



자료: 『平成21년 재정검정결과 리포트』 노동후생성연금수리과 2010.3

② 급여와 재원의 내역(Balance She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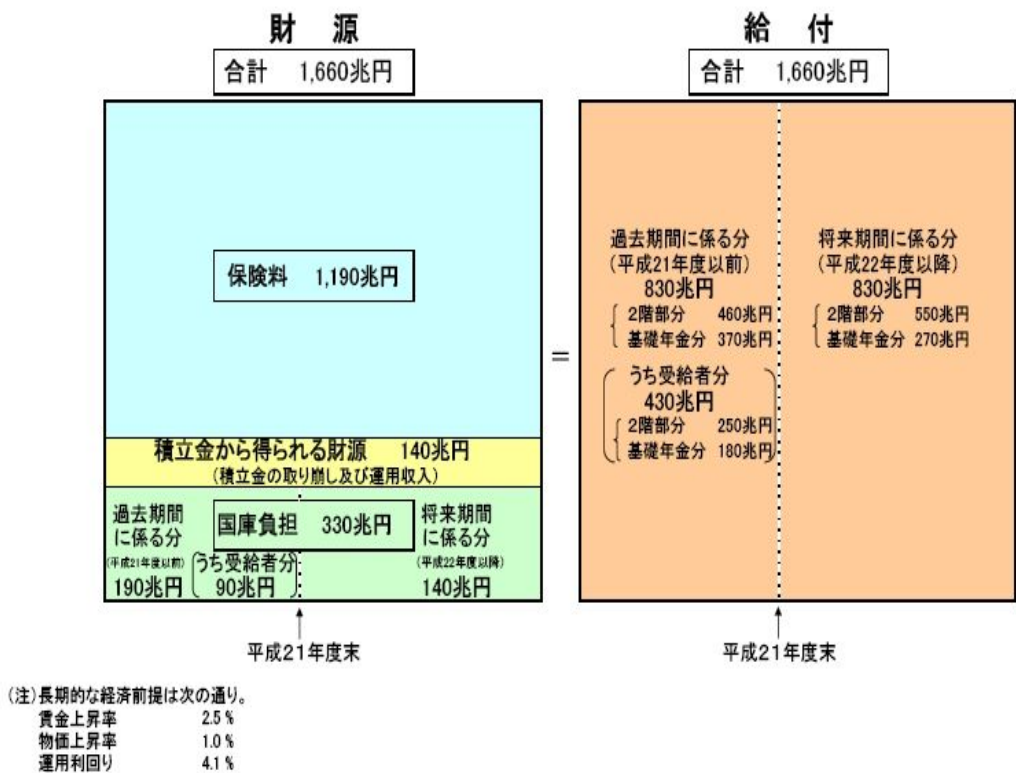
일본후생연금은 미국 OASDI⁸⁾와 캐나다 CPP와는 달리 미적립부채를 명시적으로 계산하기 보다는 국고부담을 통해 수지균등을 맞추고 있다. 국고부담을 미적립부채로 볼 수 있으며, 이 금액을 2009년 이전급여를 위한 국고부담과 2009년 이후 가입자를 위한 부분으로 분리하여 계산하고 있다. 2009년 이전기간에 해당하는 국고부담은 190조엔이고, 2009년 이후 가입자에 대한 국고부담은 140조엔으로 과거가입자에 대한 미적립부채가 더 크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2010년부터 2080년까지 10년 간격으로 국고부담액을 제시하여 코호트별 미적립부채의 규모를 보여주고 있다.

8) 미국 OASDI의 경우 과거가입자, 현가입자, 미래가입자별로 미적립부채의 규모를 보여주고 있어 일본후생연금 보다 더 상세하게 세대간 회계를 계산하고 있음.

[그림 7] 일본 후생연금의 밸런스시트

第4-2-5図 厚生年金の財源と給付の内訳（運用利回りによる換算）
－平成21年財政検証、基本ケース－



자료: 『平成21年 재정검정결과 리포트』 노동후생성연금수리과 2010.3

마. 해외 주요국 재정평가의 시사점

(1) 재정안정목표 측면

해외 주요국가의 공적연금 재정평가가 시사하는 바는 재정안정목표가 설정되어 있고 이러한 목표가 달성가능한지를 다양한 지표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후생연금의 재정추계는 2004년 법개정을 통해 재정안정을 달성할 수 있도록 보험료인상과 급여삭감을 전제한 상태에서 향후 100년간 재정이 안정되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100년 후에도 적립배율이 1 이상으로 유지되는지를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재정추계에서 국고부담을 지속적으로 증가시켜 적립배율이 1 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캐나다 CPP도 일본과 유사하게 법개정내용을 반영한 재정추계결과가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보험료는 9.9%를 넘지 않는 상태에서 적립배율이 추계기간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지를 확인하고 있다. 일본과 캐나다의 재정추계는 명확한 재정안정 목표를 가지고 법개정의 효과가 재정추계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반면에 미국 OASDI는 명확한 재정안정목표를 갖고 있지 않고 있으며 재정추계결과는 재정안정이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 지표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국민연금의 1차, 2차 재정추계결과는 명확한 재정안정목표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측면에서 미국 OASDI 재정추계와 유사하다. 다만 1, 2차 재정추계결과 부분적인 제도개선을 단행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는 미국 OASDI와 차별화된다고 볼 수 있다. 제3차 국민연금재정 평가가 1, 2차 평가보다 발전하기 위해서는 일본과 캐나다와 같이 명확한 재정안정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재정평가지표 측면

미국, 캐나다, 일본의 재정추계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지표가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재정추계보고서 본문에 제시하지 않는 경우 부록에 추가적인 지표를 제공하여 재정상태를 입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 국민연금재정 추계와 다르다.

(가) 재정평가를 위한 평가지표의 분류

연금제도의 재정상태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평가지표가 필요하다. 평가지표는 연금재정의 총량(stock)상태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 현금흐름(flow)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구분해 볼 수 있다. 평가지표는 평가시점별로도 구분될 수 있다. 추계기간전체 또는 추계기간말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방법과 과거시점, 현시점, 미래시점으로 구분하는 방법 또는 연령별 코호트별로 평가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① 총량에 의한 평가지표

총량기준으로 재정평가를 하는 지표는 적립률과 미적립부채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적립률은 평가시점에 관계없이 적용할 수 있어 추계기간말을 기준으로 하는 평가에만 국

한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미적립부채의 경우 세대간별로 구분해서 계산하는 경우 최근 주요 해외 공적연금기금에서 계산하기 시작한 Balance Sheet가 된다. Balance sheet의 계산은 국가마다 차이가 있고 기본적으로 세대별로 분리해서 미적립부채의 계산하는 방식을 갖고 있다. Balance Sheet는 일종의 세대간 회계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으며 세대를 연령대별로 분리해서 분석하는 경우 코호트별 평가가 가능하다.

연령코호트별로 총량적인 평가지표는 ‘급여총액/보험료총액비’가 있다. 일본의 연금재정검증보고서에서 사용하는 지표로 연령대별로 자신이 부담한 보험료총액대비 수급하게 되는 급여총액을 특정시점으로 현재가치화 하여 비교한 수치이다. 이 비율도 세대간 회계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며 세대간부양의 규모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표이다. 캐나다의 CPP는 내부수익률로 세대간부양규모를 보여주고 있다.

② 현금흐름에 의한 평가지표

현금흐름에 의한 평가지표는 연금재정의 당해 연도 수입과 지출 등 당해 연도 수지를 중심으로 평가하는 지표를 의미한다. 현금흐름을 기준으로 한 대표적인 평가지표가 적립배율이다. 적립배율은 연초 기금자산으로 당해 연도 급여지출을 감당할 수 있는 정도를 평가하는 지표이다. 제도가 완전부과방식으로 진입한 이후에는 적립배율만을 평가해도 제도의 재정건전성을 평가할 수 있다. 계리적수지차는 평가기간 전 기간에 걸쳐 재정의 수지균등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수입의 부과대상소득대비 비율이고, 당해 연도의 수리균등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수입의 부과대상소득대비 비율은 연간수지차가 된다.

이 두 지표는 부분적립방식에서 부과방식으로 진입하지 않은 연금제도의 재정건전성을 평가하는데 필요한 지표이다. 부과전환보험료율이 추계기간 전 기간에 걸쳐 일정하게 유지된다면 세대간 전가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지표이다. 당해 연도 수입보다 지출이 큰 시점을 의미하는 수지적자발생시점 또한 현금흐름에 의한 평가지표가 될 수 있으며 이 지표는 연금제도가 부분적립상태에서 완전부과방식으로 성숙되지 않는 상태에서 재정건전성을 평가하는 지표이다. Current Service Cost는 캐나다의 재정추계에서 사용하는 지표로 현재 가입자들이 1년 동안 획득한 미래급여의 규모를 보험료부과대상 소득 대비 비율로 나타낸 지표로 현재의 보험료율과 비교하면 부담과 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다.

〈표 15〉 평가변수와 평가시점별 평가지표의 구분

평가변수	평가시점		
	추계기간전체	세대간별 (과거가입자, 현재가입자, 미래가입자)	코호트별 (5세, 10세)
총량 (stock)	적립률 미적립부채 부과방식전환보험료율	미적립부채 (Balance Sheet) Solvency test	(급여총액/보험료총액비), 내부수익률
현금흐름 (flow)	적립배율 계리적수지차 연간수지차 기금고갈시점 Current Service Cost		

(나) 연금제도별 적합한 평가지표

이러한 지표들을 연금제도별로 적합성을 구분해 보면 아래 〈표 16〉과 같다.

연금제도가 완전부과방식으로 진입한 경우, 적립배율 또는 연간수지차 만으로도 재정건전성을 평가해 볼 수 있다. 완전적립방식인 경우 100%적립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연간 적립률이 재정건전성의 지표가 될 수 있다. 일부 국가는 법에 의해 완전적립연금제도에 대해 solvency test를 실시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Solvency test는 완전적립방식 연금제도의 세대간 회계로 볼 수 있다. 급여부채를 수급자부분과 가입자부분으로 구분하고 가입자부분을 다시 근로자기여분에 의해 발생한 급여부채와 고용주기여에 의해 발생한 부채로 각각 분리한 후 기금자산이 이들 부채를 어느 정도 감당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그러나 부분적립방식인 경우 완전부과방식 또는 완전적립방식의 평가지표만을 제시하는 경우 재정안정성이 왜곡될 수 있다. 부분적립방식은 제도측면에서 불안정하고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다양한 지표로 양적·질적 평가가 이루어져야만 한다. 〈표 16〉은 미국, 캐나다, 일본 연금제도에서 사용하고 있는 평가지표를 분류한 것이다. 이러한 평가지표와 국민연금 2차재정평가시 사용된 지표를 비교하면 큰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국민연금재정평가는 적립배율과 부과방식전환보험료가 지표로 사용되었다. 연금제도가 국민연금보다 더 성숙한 국가들이 다양한 평가지표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해 볼 때 부분적립방식으로 연금제도가 불안정한 국민연금은 최소한 이들 국가가 사용하는 지표수준으로 평가지표를 다양화시켜야 함을 알 수 있다.

〈표 16〉 공적연금 재정방식별 재정평가지표

제도별 평가지표	평가시점			국민연금 재정평가지표
	추계기간전체	세대간별 (과거가입자, 현재가입자, 미래가입자)	코호트별 (5세, 10세)	
완전부과방식	적립배율, 연간수지차			
완전적립방식	적립률	Solvency test		
부분적립방식	계리적수지차, 미적립부채, 적립배율, 적립률, 수지적자발생시점, 부과방식전환보험료율 Current Service Cost	미적립부채 (Balance Sheet)	급여총액/ 보험료총액비, 내부수익률,	적립배율, 부과방식전환 보험료율

6. 결론 및 제언

2011년 국가회계기준 기금재무제표는 재무제표의 구성항목으로 필수보충정보와 부속명세서를 제시하고 있다. 국가회계기준 제54조는 필수보충정보, 주식 및 부속명세서의 구성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제54조(필수보충정보)

- ① 필수보충정보는 재무제표에는 표시하지 아니하였으나, 재무제표의 내용을 보완하고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정보를 말한다.
- ② 필수보충정보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유산자산의 종류, 수량 및 관리상태
 2. 연금보고서
 3. 보험보고서
 4. 사회보험보고서
 5. 국세징수활동표
 6. 총잉여금·재정운영결과조정표
 7. 수익·비용 성질별 재정운영표
 8. 그 밖에 재무제표에는 반영되지 아니하였으나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
- ③ 필수보충정보의 작성기준과 서식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5조(주식)

- ① 주식은 정보이용자에게 충분한 회계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채택한 중요한 회계정책과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설명한 것을 말한다.
- ② 이 규칙에서 규정한 주식 사항 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식으로 표시한다.
 1. 중요한 회계처리방법
 2. 장기차입부채 상환계획
 3. 장기충당부채
 4.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
 5. 우발사항 및 약정사항(지급보증, 파생상품, 담보제공자산 명세를 포함한다)
 6. 전기오류수정 및 회계처리방법의 변경
 7. 순자산조정명세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과 재무제표의 이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6조(부속명세서)

부속명세서는 재무제표에 표시된 회계과목에 대한 세부 명세를 명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서, 부속명세서의 종류, 작성기준 및 서식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국가회계기준은 일반회계 관점에서 부채의 정의와 개념 및 인식기준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나 기금재무제표에는 연금부채에 대하여 정확한 공시가 없다. 또한 위에 제시한 바와 같이 2011년 기금재무제표의 필수보충정보와 부속명세서에는 연금부채의 인식기준에 대한 정보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는 필연적으로 국민연금기금회계에서 미래에 발생하는 급여지급의 장기계리적 추정을 제공하는 정보가 미비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미래에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급여를 부채로 인식하지 않는 결과를 야기한다. 결국 미래부채의 현재할

인과 계리화의 실패는 순자산을 과대하게 계상하는 문제점을 만들어 낸다.

결국 「국가회계법」을 최상위법으로 한 연금부채의 불명확성은 국민연금기금의 회계처리에 있어서 바람직한 기금회계처리에 대한 기준제시가 필요하다는 논리로 귀결된다.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에 있어 2009년 이전의 기업회계기준은 사실상 연금부채에 대한 재무제표의 인식기준이 불명확하였고 정보가 미비된 상태였다. 불명확한 회계기준 하에서 기업회계기준의 적용은 연금부채의 인식 및 평가의 왜곡을 야기하였다. 주식발행을 통한 기업의 증자를 계상하기 위한 대차대조표의 자본계정을 국민연금회계에도 일괄 적용함으로써 대차대조표의 구성상의 문제점을 노출하였다. 또한 연금부채에 대한 불명확한 근거로 인해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의 회계적 비일관성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정부와 국회는 2009년부터 국제회계기준(IFRS)을 근거로 하여 국가회계법 및 부속법령 등을 제·개정하고 정비하여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고시하였다. 국가회계기준의 기금결산보고서는 통합재무제표 작성을 원칙으로 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연금기금이 갖는 고유한 특성을 기금결산보고서에 제시하려 시도하였다. 기금운용의 측면에서 자산과 부채의 차이를 나타내는 순자산이 장기적으로 안정될수록 효율적 자산배분의 목표 설정이 용이해 질 것이다. 편의(Bias)없는 순자산의 평가는 연금부채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평가가 선행되어야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회계기준에 근거한 부속법령 등이 연금부채의 계리적 평가와 인식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어야 하나, 2009년부터 시작된 국가회계기준은 명확한 부채산정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연금부채평가의 핵심인 적립개선일람표(Schedule of Funding Progress)나 연금부채 계리기준을 국가회계법 및 부속법령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결산보고서에도 이를 공시하지 않고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 국민연금기금의 자산과 부채의 적절한 관계를 표현하기 위한 적립률(Funded Ratio)이 제시되어야 하나 이 역시 미비된 상태이다. 또한 국가회계기준 기금결산보고서의 구성이 산만하고 일관성이 없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국민연금 기금회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주요선진국의 회계기준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미국정부회계기준(GASB)은 본문에서 논의한 것과 같이 재무제표의 구성과 부속서류의 구성이 치밀하며, 계리적으로 연금부채를 인식하고 평가하여 재무제표에 포함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연금기금적립률을 계산하여 필수보충정보내의 적립개선일람표(Schedule of Funding Progress)에 제시하고 있다.

국민연금기금의 결산보고서는 국민연금을 적립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는지 아니면 부과방식에 준하는 회계기준을 적용해야하는지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못하다. 국

민연금 재정방식을 적립방식으로 본다면 정부는 미국정부회계기준(GASB)에서 제시하고 있는 적립률 정보를 필수보충정보에 수록할 필요가 있으며, 반면 부과방식으로 본다면 장기재정추계보고서에 세대간 회계 관련 정보가 제공되어 정확한 재정평가가 가능하도록 개선될 필요가 있다. 연금제도가 완전부과방식으로 진입한 경우, 적립배율 또는 연간수지차 만으로도 재정건전성을 평가해 볼 수 있다. 완전적립방식인 경우 100%적립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연간 적립률이 재정건전성의 지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부분적립방식인 경우 완전부과방식 또는 완전적립방식의 평가지표만을 제시하는 경우 재정안정성이 왜곡될 수 있다. 부분적립방식은 제도측면에서 불안정하고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다양한 지표로 양적·질적 평가가 이루어져야만 한다.

〈표 17〉은 미국, 캐나다, 일본의 공적연금제도에서 사용하고 있는 평가지표를 분류한 것이다. 이러한 평가지표와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재정추계보고서 상의지표와 비교하면 큰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국민연금재정평가는 적립배율과 부과방식전환보험료가 지표로 사용되었다. 연금제도가 국민연금보다 더 성숙한 국가들이 다양한 평가지표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해 볼 때 부분적립방식으로 연금제도가 불안정한 국민연금은 최소한 이들 국가가 사용하는 지표수준으로 평가지표를 다양화시켜야 함을 알 수 있다.

〈표 17〉 연금제도별 필요한 평가지표

제도별 평가지표	평가시점			국민연금 재정평가지표
	추계기간전체	세대간별 (과거가입자, 현재가입자, 미래가입자)	코호트별 (5세, 10세)	
완전부과방식	적립배율, 연간수지차			
완전적립방식	적립률	Solvency test		
부분적립방식	계리적수지차, 미적립부채, 적립배율, 수지적자발생시점, 부과방식전환보험료율 Current Service Cost	미적립부채 (Balance Sheet)	급여총액/ 보험료총액비, 내부수익률,	적립배율, 부과방식전환보 험료율

참고문헌

- 『국가회계법』, 기획재정부, 2013
- 『연금회계 평가 및 공시 지침』, 기획재정부, 2012
- 『국가회계법시행령』, 기획재정부 2011
- 『알기 쉬운 국제회계기준』, 금융감독원, 2011
-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 2009
- 『기금결산보고서』, 보건복지부, 2007~2012
- 『평성21년 재정검정결과 리포트』, 노동후생성연금수리과 2010.3
- 『Provisions, Contingent Liabilities and Contingent Assets, International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 37, 2012
- 『Quarterly Financial Statement, Canada Pension Plan Investment Board, 2012
- 『The 2012 Annual Report of the Board of Trustees of the Federal OASDI Trust Fund』 OASDI Trust Fund 2012
- 『Comprehensive Annual Financial Report』, State of California, 2011
- 『Comprehensive Annual Financial Report-2011』, CalPERS 2011
- 『Actuarial Report 25th on the Canada Pension Plan 2010』, Office of the Chief Actuary, CPP, Canada 2010
- 『Statement No.25 of the Governmental Accounting Standard Board』, GASB 1994

• • • 부 록

〈부표 1〉 국제회계기준(IFRS, GASB)

	국제회계기준 (IFRS)	미국정부회계 (GASB)
주요재무제표 (Principal Financial Statement)	-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 -Statement of profit or loss -Statement of changes in equity -Statement of cash flows -기타사항	-Statement of Plan Net Assets · Assets · Liability · Net Assets Held in Trust for Pension Benefits -Statement of Changes in Plan Net Assets · Additions · Deductions
주석 (Notes to the Financial Statements)	-Statement of Compliance -Summary of significant accounting policies applied -Other Supporting information -Contingent liabilities -Unrecognized contractual commitments -Non-financial disclosures	-Plan Description -Summary of Significant Accounting Policies -Contributions and Reserves -Concentrations
보충정보 등 (Supplemental Information)	-주석(Notes)와 보충정보(RSI)를 구분하지 않고 있음	-The Parameter -Schedule of Funding Progress -Schedule of Employer Contributions -Note to Required Schedules

자료: 『연금회계 평가 및 공시 지침』, 기획재정부, 2012

〈부표 2〉 CalPERS의 적립률 및 미적립부채

Exhibit A: Funding Progress – Unfunded Liability & Funded Ratios

(Dollars in Millions)

Actuarial Valuation Date	Actuarial Value of Assets (1)	Actuarial Accrued Liability (AAL) – Entry Age (2)	Unfunded AAL (UAAL) (Funding Excess) (2)–(1)	Funded Ratio – Actuarial Value of Assets Basis (1)÷(2)	Annual Covered Payroll (3)	UAAL as a % of Covered Payroll [(2)–(1)]÷(3)	Market Value of Assets (4)	Funded Ratio – Market Value of Assets Basis (4)÷(2)
PERF								
6/30/01	\$166,860	\$149,155	\$(17,705)	111.9%	\$30,802	(57.5)%	\$156,035	104.6%
6/30/02	156,067	163,961	7,894	95.2	32,873	24.0	142,455	86.9
6/30/03	158,596	180,922	22,326	87.7	34,784	64.2	144,330	79.8
6/30/04	169,899	194,609	24,710	87.3	35,078	70.4	167,110	85.9
6/30/05	183,680	210,301	26,621	87.3	36,045	73.9	189,103	89.9
6/30/06	199,033	228,131	29,098	87.2	38,047	76.5	211,188	92.6
6/30/07	216,484	248,224	31,740	87.2	40,864	77.7	251,162	101.2
6/30/08	233,272	268,324	35,052	86.9	44,236	79.2	238,041	88.7
6/30/09	244,964	294,042	49,078	83.3	45,100	108.8	178,860	60.8
6/30/10	257,070	308,343	51,273 ¹	83.4	44,984	114.0	201,632	65.4

자료: 『Comprehensive Annual Financial Report-2011』, CalPERS

〈부표 3〉 CalPERS의 Solvency Test

Valuation Date	Accrued Liability				Valuation Assets	Portion of Actuarial Accrued Liabilities Covered by Valuation Assets		
	Member Contributions ¹ (1)	Terminated, Retirees & Beneficiaries (2)	Employer-Financed Portion of Active Members (3)	Total Accrued Liability (1) + (2) + (3)		(1)	(2)	(3)
PERF (Dollars in Billions)								
6/30/05	\$31.3	\$103.0	\$76.0	\$210.3	\$183.7	100%	100%	65.0%
6/30/06	31.6	111.4	85.1	228.1	199.0	100	100	65.8
6/30/07	34.1	123.0	91.2	248.2	216.5	100	100	65.2
6/30/08	36.7	133.8	97.8	268.3	233.3	100	100	64.2
6/30/09	39.1	146.8	108.2	294.1	245.0	100	100	54.6
6/30/10	40.6	160.2	107.5	308.3	257.1	100	100	52.3

자료: 『Comprehensive Annual Financial Report-2011』, CalPERS